



제 19 대 대통령 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



제 19 대 대통령 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틀 마무리하며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마치고 운영기간동안의 심의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를 담은 선거기사심의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부위원장님 이하 심의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과정입니다. 언론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불공정한 기사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언론이 불공정한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를 제재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객관

적인 선거보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8일 있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재조치 중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은 ‘사과문 게재’ 부분이 삭제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규정된 모든 제재조치들이 법률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따라 대통령 권위에 의한 선거로 치러졌습니다. 탄핵이 결정되고 약 2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이 240일이지만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는 조기 대선에 따라 해당 기간이 약 50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심의위원회는 총 419개 매체를 심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고 승 우



하여 자체심의 9건과 시정요구심의 1건, 총 10건에 대하여 제재결정을 하였습니다. 의결건수의 절대량 자체는 총 51건의 제재를 한 지난 제18대 대선 심의 위원회에 미치지 못하지만, 운영기간이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총 10건의 의결 중 공정성 기준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는 6건이 있었습니다.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다소 모호한 개념이라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 심의할 때 더욱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언론사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입장을 공표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의 공정성 기준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였습니다. 선거관련 뉴스가 이제는 지면매체와 뉴스통신보다는 인터넷매체로, 특

히 SNS나 팟캐스트 등 새로운 경로로 많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어 심의위원회 역시 변화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뉴스소비 방식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의제설정 면에서 지면매체와 뉴스통신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지면매체와 뉴스통신에 대해 심의하는 현재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19대 대선 선거보도 심의를 돌아본 내용과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 선거기사심의백서가 향후 심의위원회의 선거보도 심의와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함께 선거기사를 심의하고 토론해 주신 심의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심의위원장 백서 발간사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기사심의를 마무리하며」 004

제 1 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장 위원회 구성 010

제2장 심의·의결 절차 015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018

제 2 부

심의·의결 현황

제1장 심의·의결 현황 및 분석 024

I. 심의·의결 현황 개요 025

II. 자체 심의 분석 027

1. 위반유형별 분석 027

2. 결정유형별 분석 029

3. 매체유형별 분석 031

III. 시정요구 심의·의결 현황 032

제2장 대통령선거 심의·의결현황 비교 033

제 3 부

종합평가

제1장 심의위원 평가 044

제2장 결산 좌담 062

제 4 부

심의·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074

제2장 시정요구심의 108

부 록

1.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8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124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136
4. 심의대상 매체 현황 157
5. 색 인 161

제 1 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장 위원회 구성



제2장 심의·의결 절차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제1장 위원회 구성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기사(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제19대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2017. 3. 10.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궐위선거로 치러졌으며,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한 2017년 5월 9일에 선거가 실시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라 탄핵 결정 10일 후인 2017년 3월 20일부터 선거일 30일 후인 2017년 6월 8일까지 약 80일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 구분 | 운영기간 | 선거일 | 비고 |
|-------------------------------|------------------------------|---------------|--|
|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00. 2. 25. ~ 2000. 5. 13. | 2000. 4. 13. | 2000. 2. 선거법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 |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02. 2. 14. ~ 2002. 7. 13. | 2002. 6. 13. | |
|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02. 8. 21. ~ 2003. 1. 18. | 2002. 12. 17. | |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03. 12. 17. ~ 2004. 5. 15. | 2004. 4. 15. | |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06. 1. 31. ~ 2006. 6. 30. | 2006. 5. 31. | |
|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07. 8. 21. ~ 2008. 1. 18. | 2007. 12. 19. | |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07. 12. 11. ~ 2008. 5. 9. | 2008. 4. 9. | |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0. 2. 1. ~ 2010. 7. 2. | 2010. 6. 2. | 2009. 12. 선거법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 변경 |
|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0. 5. 29. ~ 2010. 8. 27. | 2010. 7. 28. | 2010. 1. 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재보궐선거시에도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 2010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0. 8. 28. ~ 2010. 11. 26. | 2010. 10. 27. | |
|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1. 2. 26. ~ 2011. 5. 27. | 2011. 4. 27. | |
|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1. 8. 27. ~ 2011. 11. 25. | 2011. 10. 26. | |

| 구분 | 운영기간 | 선거일 | 비고 |
|------------------------------|------------------------------|---------------|---|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1. 12. 12. ~ 2012. 5. 11. | 2012. 4. 11. | |
|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2. 2. 10. ~ 2012. 5. 11. | 2012. 4. 11. | |
|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2. 4. 22. ~ 2013. 1. 18. | 2012. 12. 19. | |
|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2. 10. 20. ~ 2013. 1. 18. | 2012. 12. 19. | |
|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3. 2. 23. ~ 2013. 5. 24. | 2013. 4. 24. | |
|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3. 8. 31. ~ 2013. 11. 29. | 2013. 10. 30. | |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4. 2. 3. ~ 2014. 7. 4. | 2014. 6. 4. | |
|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4. 5. 31. ~ 2014. 8. 29. | 2014. 7. 30. | |
|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4. 8. 30. ~ 2014. 11. 28. | 2014. 10. 29. | |
|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5. 2. 28. ~ 2015. 5. 29. | 2015. 4. 29. | |
|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5. 8. 29. ~ 2015. 11. 27. | 2015. 10. 28. | |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5. 12. 14. ~ 2016. 5. 13. | 2016. 4. 13. | |
| 2016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6. 2. 13. ~ 2016. 5. 13. | 2016. 4. 13. | 2015. 8. 선거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대선이 없는 해에는 재보궐선거 1회로 축소 |
|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7. 2. 11. ~ 2017. 5. 12. | 2017. 4. 12. | |
|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2017. 3. 20. ~ 2017. 6. 8. | 2017. 5. 9. | 2017. 3. 10. 탄핵결정에 따라 조기에 대통령선거 실시 |

2. 구성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추천권자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언론학회(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언론인단체) 및 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단체) 등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였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 구분 | 성명 | 이력 | 추천단체 | 비고 |
|------|-----|----------------------|-----------|-------------------------|
| 위원장 | 고승우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 민주언론시민연합 | |
| 부위원장 | 윤원구 | (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위 원 | 이양호 |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 더불어민주당 | |
| | 한희원 | 동국대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 자유한국당 | |
| | 김 당 | (전)오마이뉴스 편집주간 | 국민의당 | |
| | 박철규 | 명지대 초빙교수 | 바른정당 | |
| | 이은주 |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한국언론학회 | |
| | 강신업 | (전)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
| | 김화성 | (전)동아일보 부국장 | 한국신문협회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 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3.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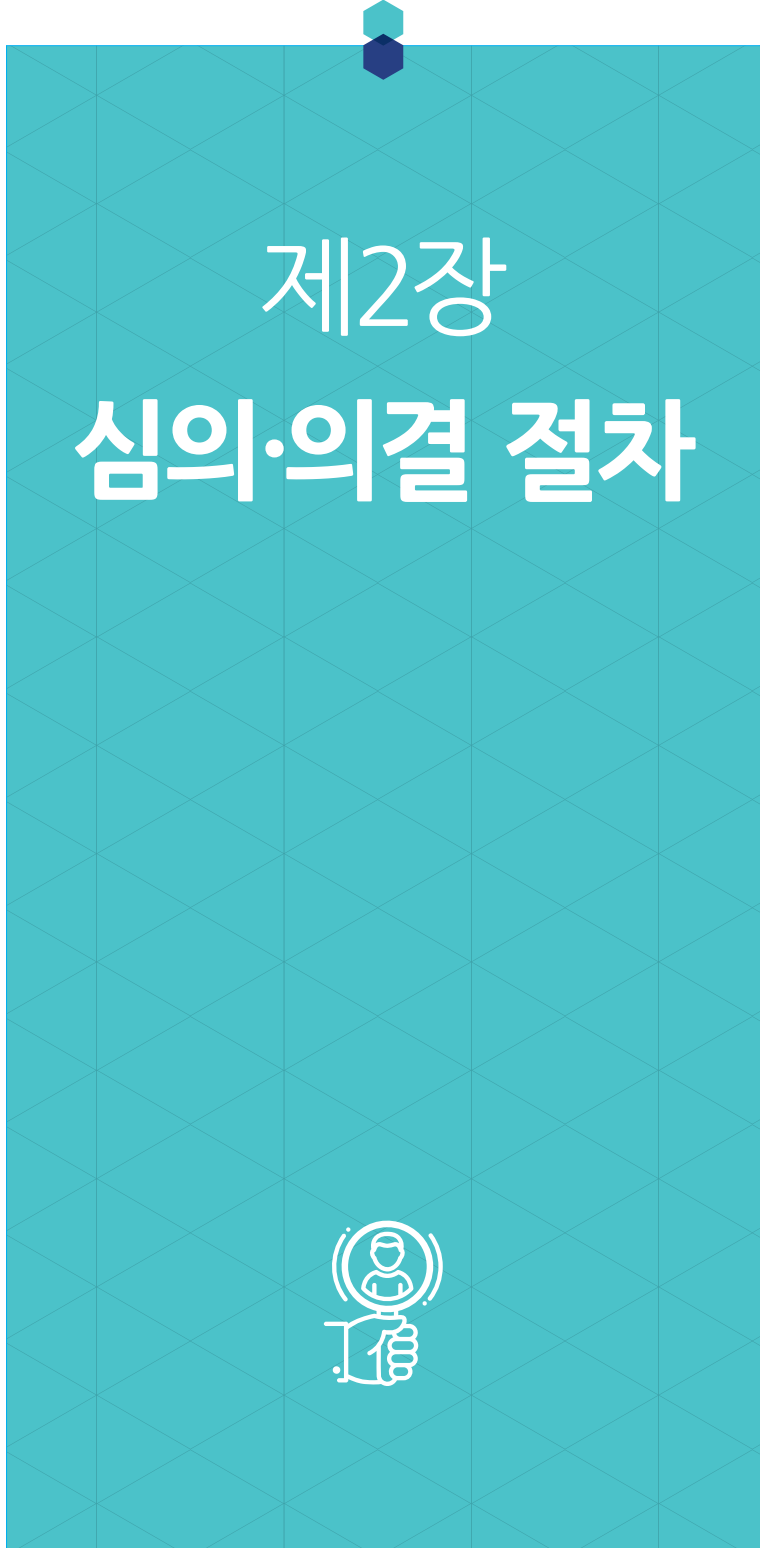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제재조치 관련규정]

| 제재조치 | 관련법률 | 관련규칙 |
|----------|--------------------|------------------|
| 정정보도문 게재 |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
| 반론보도문 게재 | 동법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 | |
| 경고결정문 게재 | 동법 제8조의3제3항 | |
| 주의사실 게재 | " | |
| 경고 | " | |
| 주의 | " | |
| 권고 | " | |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사진 :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화성 위원, 이양호 위원, 박철규 위원, 강신업 위원, 한희원 위원, 김당 위원, 권우동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이은주 위원, 박용상 당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고승우 심의위원장, 윤원구 부위원장>



1. 자체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심의 담당 부서는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모니터링하여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이하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보도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 및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참고하여 심의한 후 불공정한 보도라고 판단하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한다. 그리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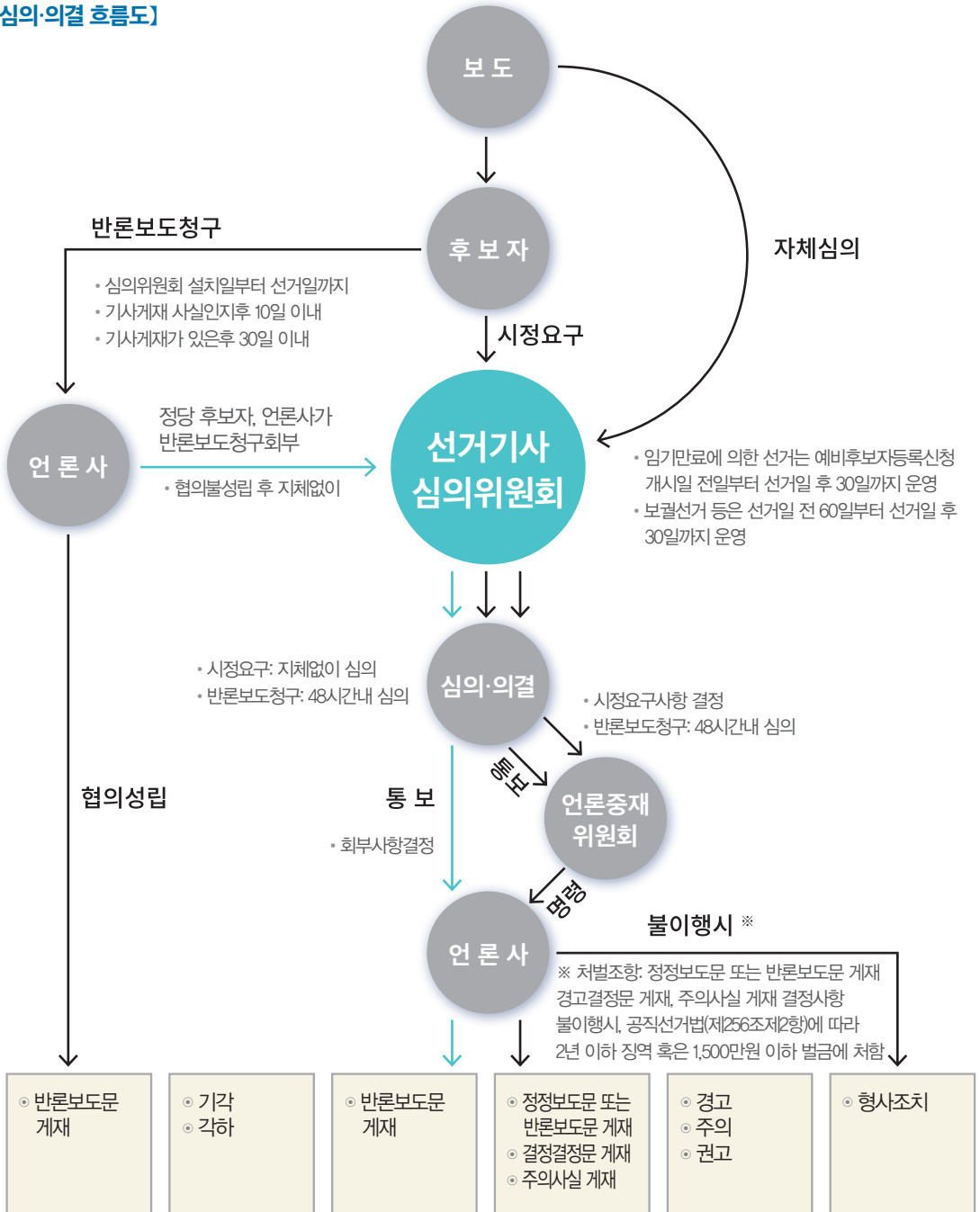
2. 시정요구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6항, 제8조의3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해당 보도, 시정요구인의 신청취지 및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토대로 심의한다. 시정요구인의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시정요구인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한다.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며,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결정 이후의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4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문 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이나 시정요구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심의·의결 흐름도]



- 청구 받은 때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발행호에 게재

재심청구

-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 한다.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개정

언론중재위원회는 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을 개정하였다. 심의위원회 제재조치 중 ‘사과문 게재’를 삭제하고(제15조제1항제1호), 제재조치를 열거한 조항에 ‘권고’를 포함하였다(제15조제1항제5호,제2항).

또한 제재조치 시 언론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범위 및 제재조치 불이행 시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범위를 수정하였다(제17조제2항,제3항).

※ 신규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5조(심의의결)</p> <p>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p> <p>1. 사과문 게재 2 ~ 4. (생략) 5. 경고 또는 주의</p> <p>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 <p>제15조(심의의결)</p> <p>① ----- ----- -----.</p> <p>1.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5. 경고, 주의 또는 권고</p> <p>② ----- -----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 <p>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p> <p>① (생략)</p> <p>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 ⑤ (생략)</p> | <p>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 -----.</p> <p>③ -----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

3. 선거기사심의기준 개정

심의위원회는 위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개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심의위원회 제재조치 중 '사과문 게재'를 삭제하고(제13조제1항제1호), 제재조치를 열거한 조항에 '권고'를 포함하였다(제13조제1항제8호, 제2항).

※ 신규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3조(제재결정 등)</p> <p>① (생략)</p> <p>1. 사과문 게재</p> <p>가.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7. (생략)</p> <p><신 설></p> <p>② 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 <p>제13조(제재결정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삭 제></p> <p>2~7. (현행과 같음)</p> <p>8. 권고</p> <p>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언론사에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 ----- -----기타 필요한 조치-----.</p> <p>③ (현행과 같음)</p> |

제 2 부



심의· 의결현황



제1장 심의·의결현황 및 분석



제2장 대통령선거 심의·의결현황 비교





제1장 심의·의결현황 및 분석



I. 심의·의결 현황 개요

1. 자체심의

심의담당부서는 정기간행물대장에 등록된 매체 중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할 가능성이 있는 419개의 심의대상매체(중앙일간지 24개, 지역일간지 103개, 기타일간지 3개, 종합주간지 41개, 지역주간지 222개, 월간지 17개, 뉴스통신 9개)를 선정하고, 해당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를 검토하여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운영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을 위반한 9건의 자체심의 안건에 대해 제재결정을 하였다. 제18대 대선 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 의결건수(47건)에 비하면 그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대선 심의위원회의 경우 운영기간이 270일이지만 제19대 대선은 탄핵 결정으로 조기에 실시되어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이 약 80일로 축소되었고, 여론조사보도요건 관련 심의가 2016년부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의결현황을 결정유형별로 살펴보면 권고 4건(44.5%), 주의 3건(33.3%), 경고 2건(22.2%) 순으로 나타났다.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주의사실 게재 등의 제재결정은 없었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5건(55.6%), 광고 제한 위반이 3건(33.3%),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이 1건(11.1%)이었다.

매체유형별 의결현황을 보면, 일간지는 6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중앙일간지는 2건, 지역일간지는 4건의 제재를 받았다. 일간지에 대한 제재 6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제한 위반 2건으로 나타났다. 결정유형별로는 주의와 권고가 각각 3건이었다.

주간지는 3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지역주간지에 대한 제재는 없었으며 3건 모두 종합주간지에 대한 제재였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형평성 위반이 1건,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1건, 광고제한 위반 1건이었다. 결정유형별로는 경고 2건, 권고 1건으로 나타났다.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의결현황]

| 간별 | 계 | 위반 유형 | | | | 결정 내용 | | | |
|----------|----|-----------------|-------------------|------|------|-------------------|----|----|----|
| | | 공정성 및 형평성 | 객관성 및 사실 보도 | 광고제한 | 기고 등 | 정정 보도문 등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 일간 신문 | 중앙 | 2 | 1 | | 1 | | | 1 | 1 |
| | 지역 | 4 | 3 | | 1 | | | 2 | 2 |
| 종합주간지 | | 3 | 1 | 1 | 1 | | 2 | | 1 |
| 지역주간지 | | 0 | | | | | | | |
| 월간지 | | 0 | | | | | | | |
| 뉴스통신 | | 0 | | | | | | | |
| 총계 | | 9 | 5 | 1 | 3 | 0 | 2 | 3 | 4 |

2. 시정요구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후보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1건으로, 중앙일간지의 칼럼에 대한 시정요구였다. 시정요구인은 해당 칼럼이 공정성 및 형평성 그리고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요구심의를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의 진술을 참고하여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처리 결과 경고 결정을 하였다.

3. 반론보도회부청구 및 재심청구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반론보도회부청구와 재심청구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II. 자체심의 분석

1. 위반유형별 분석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 제목 | 결정 |
|------------|------|------------|-------|---------------------------------|----|
| 2017대선-자심1 | 대구일보 | 2017.3.21. | 26 | 불신과 걱정만 앞서는 대선 D-50 | 주의 |
| 2017대선-자심4 | 미래한국 | 2017.4.5. | 8~14 | 정권이 바뀐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 경고 |
| | | | 26~29 | 5·9대선은 체제수호 vs 반체제 전쟁 | |
| 2017대선-자심5 | 경남매일 | 2017.4.10. | 23 |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젠 국민 품으로 | 주의 |
| 2017대선-자심6 | 시민일보 | 2017.4.18. | 3 | '당선 가능성' 문재인 vs. '더 좋은 후보' 안철수? | 권고 |
| 2017대선-자심9 | 조선일보 | 2017.5.9. | B7 | [두근두근 뇌운동] [629]얼굴 삼행시 | 주의 |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기사는 모두 5건이었다. 이중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게재한 칼럼이 3건 있었으며, 나머지 2건은 각각 뉴스통신의 사실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 부분만을 누락한 보도와 선거일 당일에 뇌운동 관련 교육자료를 게재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성명 및 사진을 강조한 보도였다.

(1)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의 칼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여 제재받은 사례가 2건 있었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칼럼에 게재하여 제재받은 사례는 1건 있었다.

경남매일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당선을 지지하는 칼럼을 게재하여 심의위원회의 주의 결정을 받았다.

시민일보는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주변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더 좋은 후보'로 표현하고 그를 지지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여 권고 결정을 받았다.

미래한국은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여 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개의 칼럼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념에 대해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2) 그 외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사례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한 보도 중에는 지난 심의위원회 제재사례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사례들이 있었다.

대구일보는 대통령선거 출마예정자들을 평가하는 한 뉴스통신사의 사실을 전제하면서 홍준표 출마예정자에 대한 비판 부분만을 누락하여 주의 조치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뇌운동을 위한 교육자료 섹션에서 선거일 당일에 문재인 후보의 사진을 활용하여 그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특정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기사에 준한다고 판단하여 주의 결정을 하였다.

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 제목 | 결정 |
|------------|------|------------|----|---------------------------|----|
| 2017대선-자심8 | 주간한국 | 2017.4.24. | 14 | 文 사주, 安에 우월... 安 음택 훼손 변수 | 경고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1건 있었다. 주간한국은 역술인이 사주, 풍수지리 등을 활용하여 정당한 근거없이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여 심의위원회의 경고 결정을 받았다.

다. 광고 제한 위반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 제목 | 결정 |
|------------|------|------------|----|-------------------------------------|----|
| 2017대선-자심2 | 경향신문 | 2017.3.22. | 2 |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권고 |
| 2017대선-자심3 | 주간경향 | 2017.3.21. | 21 | 명사들의 아주 특별한 서재 - 책과 연애하는 41가지 방법 | 권고 |
| 2017대선-자심7 | 영남일보 | 2017.4.24. | 11 | 5월9일 대통령 선거-대권은? | 권고 |

광고 제한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3건이었다. 지난 대선 심의위원회 제재사례들은 모두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의견광고였던 반면 이번 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광고에 대해 제제한 사례는 없었으며, 3건 모두 상업광고에 대한 제재였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출마예정자가 번역하여 그의 명의를 드러나는 서적 광고를 게재하여 권고 결정을 받았다.

주간경향은 다수의 사람들이 집필한 서적을 광고하면서 집필에 참여한 대통령선거 출마예정자들(더불어민주당 안희정, 바른정당 남경필, 국민의당 안철수)의 명의를 드러나도록 광고를 게재하여 권고 조치를 받았다.

영남일보는 역학연구소 광고를 게재하여 제재를 받았다. 해당 광고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자의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운동효과를 줄 우려가 있어 권고 결정을 받았다.

2. 결정유형별 분석

가. 경고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중 2건(22.2%)의 기사에 대해 경고 결정을 하였다. 2건 모두 종합주간지에 게재된 칼럼에 대하여 제제한 것이었다. 미래한국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기준을, 주간한국은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하여 경고 결정을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기사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결정을 하였다.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 제목 | 결정 |
|------------|------|------------|-------|---------------------------|--------------------------------|
| 2017대선-자심4 | 미래한국 | 2017.4.5. | 8~14 | 정권이 바뀐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칼럼 및 기고 |
| | | | 26~29 | 5·9대선은 체제수호 vs 반체제 전쟁 | |
| 2017대선-자심9 | 주간한국 | 2017.4.24. | 14 | 文 사주, 안에 우월... 安 음택 훼손 변수 | 객관성 및 사실보도/ 칼럼 및 기고 |

나. 주의

자체심의 의결 중 주의 결정은 3건(33.3%)이 있었다.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 1건, 지역일간지 2건이었다. 대구일보는 공정성과 형평성 기준을, 경남매일과 조선일보는 공정성 기준을 위반하여 주의 결정을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직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 결정을 하였다.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 제목 | 위반유형 |
|-------------|------|------------|----|------------------------|-----------------|
| 2017대선-자심1 | 대구일보 | 2017.3.21. | 26 | 불신과 걱정만 앞서는 대선 D-50 | 공정성/ 형평성 |
| 2017대선-자심5 | 경남매일 | 2017.4.10. | 23 |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젠 국민 품으로 | 공정성/ 칼럼 및 기고 |
| 2017대선-자심10 | 조선일보 | 2017.5.9. | B7 | [두근두근 뇌운동] [629]얼굴 삼행시 | 공정성 |

다. 권고

자체심의 의결 9건 중 권고 결정은 4건(44.5%)이 있었다. 매체유형별로 분류하면 중앙일간지 1건, 지역일간지 2건, 종합주간지 1건이었다. 결정유형별로는 광고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것이 3건 있었으며, 공정성 기준을 위반한 칼럼이 1건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직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언론사에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 결정을 하였다.

| 의결번호 | 매체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 제목 | 결정 |
|------------|------|------------|----|-------------------------------------|-----------------|
| 2017대선-자심2 | 경향신문 | 2017.3.22. | 2 |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광고 제한 |
| 2017대선-자심3 | 주간경향 | 2017.3.21. | 21 | 명사들의 아주 특별한 서재 - 책과 연애하는 41가지 방법 | 광고 제한 |
| 2017대선-자심7 | 시민일보 | 2017.4.18. | 3 | '당선 가능성' 문재인 vs. '더 좋은 후보' 안철수? | 공정성/ 칼럼 및 기고 |
| 2017대선-자심8 | 영남일보 | 2017.4.24. | 11 | 5월9일 대통령 선거-대권은? | 광고 제한 |

3. 매체유형별 분석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일간지 130개(중앙지 24, 지역지 103, 기타 3), 주간지 263개(종합지 41, 지역지 222), 월간지 17개, 뉴스통신 9개로 총 419개 매체였다. 이 가운데 중앙일간지 2개, 지역일간지 4개, 종합주간지 3개 등 총 9개 매체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중 각 1건씩 제재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중앙일간지 중 2개 매체에 대해 주의 1건, 권고 1건의 제재조치를 하였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 위반 1건, 광고 제한 기준 위반 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일간지 중에서는 4개 매체가 제재 결정을 받았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건, 광고제한 위반이 1건으로 나타났으며, 결정유형별로 분류하면 주의 2건, 권고 2건으로 나타났다.

종합주간지 중에서는 3개 매체가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광고 제한 기준을 위반한 각 1건씩 있었다. 결정유형별은 경고 2건, 권고 1건이 있었다.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의 선거기사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매체별 위반현황(자체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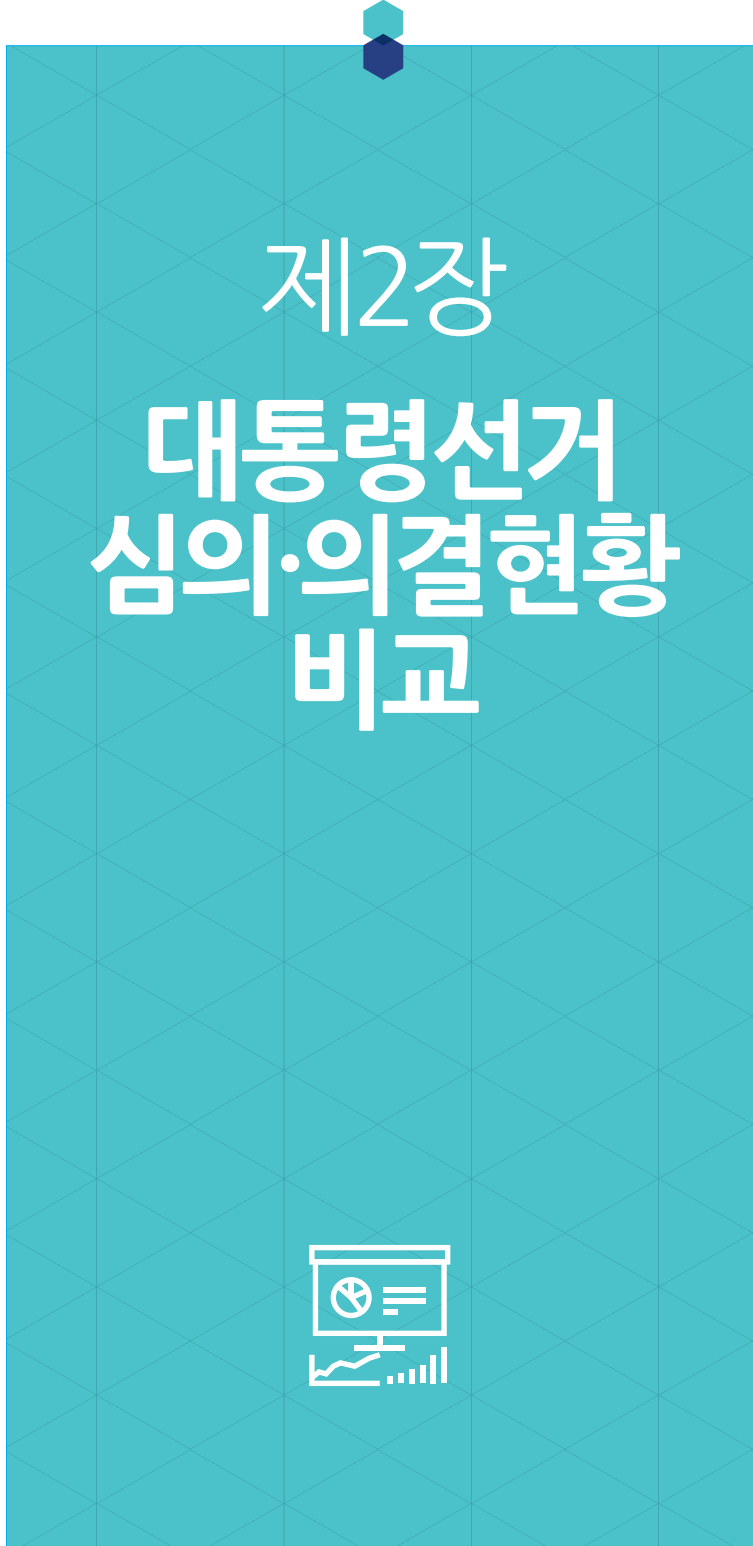
| 간별 | 계 | 위반 유형 | | | | 결정 내용 | | | |
|-------|--------|-----------|-------------|------|------|-------------|----|----|----|
| | | 공정성 및 형평성 | 객관성 및 사실 보도 | 광고제한 | 기고 등 | 정정 보도문 등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 자체 심의 | 중앙 일간지 | 경향신문 | 1 | | 1 | | | | 1 |
| | | 조선일보 | 1 | 1 | | | | 1 | |
| | 지역 일간지 | 경남매일 | 1 | 1 | | | | 1 | |
| | | 대구일보 | 1 | 1 | | | | 1 | |
| | | 시민일보 | 1 | 1 | | | | | 1 |
| | | 영남일보 | 1 | | 1 | | | | 1 |
| | 종합 주간지 | 미래한국 | 1 | 1 | | | | 1 | |
| | | 주간경향 | 1 | | 1 | | | | 1 |
| | | 주간한국 | 1 | | 1 | | | 1 | |
| 총계 | 9 | 5 | 1 | 3 | 0 | 0 | 2 | 3 | 4 |

III. 시정요구 심의·의결 현황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요구는 1건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중앙일보의 2개의 칼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것이었다. 문재인 후보자는 심의대상 칼럼이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안보불안이 발생할 것처럼 묘사하고, 후보자의 대북정책, 집권능력, 경제철학 등을 폄하하였으며, 후보자를 ‘좌파 대통령’, ‘정서적 친북주의자’ 등 편향적으로 표현하고, 후보자의 정책 및 한반도 정세를 기초로 장래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언론인으로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자의 당선을 가정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예측한 것일 뿐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고, 문재인 후보자, 김관진 안보실장 등의 평소 발언과 행동을 토대로 작성하여 객관적 근거가 있으며, 상상임을 명확히 밝힌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변하였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심의대상 칼럼은 비록 상상이라고 밝히긴 하였으나 특정 후보자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그 내용 일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유사 칼럼을 연속적으로 게재한 점, 피시정요구인이 중앙일간지로서 영향력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위 심의대상 칼럼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제2장

대통령선거 심의·의결현황 비교



심의위원회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이 신설된 이래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마다 해당 선거관련 기사를 심의·의결해오고 있다. 대선에 대한 선거기사 심의는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처음 시작되어 올해 있었던 제19대 대선까지 총 4차례 있었다. 그동안 설치·운영되었던 제16대, 제17대, 제18대 및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 의결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1. 결정유형별 의결현황 비교

| 심의 유형 | 결정 유형 | 제16대 대선 (2002) | 제17대 대선 (2007) | 제18대 대선 (2012) | 제19대 대선 (2017) | 계 |
|------------|----------|-------------------|-------------------|-------------------|-------------------|-----|
| 자체심의 | 사과문 게재 | | | 1 | | 1 |
| | 경고결정문 게재 | | 2 | | | 2 |
| | 경고 | 3 | 13 | 8 | 2 | 26 |
| | 주의 | 9 | 19 | 27 | 3 | 58 |
| | 권고 | | 1 | 11 | 4 | 16 |
| | 소계 | 12 | 35 | 47 | 9 | 103 |
| 시정요구 심의 | 정정보도문 게재 | | | 1 | | 1 |
| | 반론보도문 게재 | | 2 | | | 2 |
| | 경고 | | | | 1 | 1 |
| | 주의 | 1 | | | | 1 |
| | 권고 | | | | | 0 |
| | 취하 | | | 1 | | 1 |
| | 기각 | | | 1 | | 1 |
| | 각하 | | | 1 | | 1 |
| | 소계 | 1 | 2 | 4 | 1 | 8 |
| 총 계 | | 13 | 37 | 51 | 10 | 111 |

통상 대선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은 270일이나, 제19대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60일 후에 조기에 치러져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이 약 80일로 축소되었다. 각 대선 심의위원회의 의결건수는 제16대 대선에서 13건, 17대 대선에서 37건, 제18대 대선에서 51건이었으며,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10건이었다.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제3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이후로 심의위원회는 사과문 게재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2017년 2월 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과문 게재 부분은 삭제되었다.

지난 제17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경고결정문 게재와 반론보도문 게재가 각 2건씩, 제18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사과문 게재와 정정보도문 게재가 각 1건씩 있었던 반면,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정보도문 등의 게재를 조치한 의결이 없었다.

4차례의 대선 심의위원회 자체심의 의결 총 103건 중에서 주의 결정이 58건(5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고 26건(25.2%), 권고 16건(15.5%), 경고결정문 게재 2건(1.9%), 사과문 게재 1건(1.0%) 순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심의에 대한 결정은 4차례의 대선 심의위원회동안 총 8건이 있었으며 이 중 제재결정은 정정보도문 게재 1건, 반론보도문 게재 2건, 경고 1건, 주의 1건 등 5건이 있었다.

2. 자체심의 위반유형별 의결현황 비교

| 위반유형 | 제16대 대선 (2002) | 제17대 대선 (2007) | 제18대 대선 (2012) | 제19대 대선 (2017) | 계 |
|------------|-------------------|-------------------|-------------------|-------------------|-----|
| 공정성 및 형평성 | 6 | 28 | 12 | 5 | 51 |
| 객관성 및 사실보도 | | | 9 | 1 | 10 |
| 여론조사 보도 | 6 | 4 | 12 | | 22* |
| 광고 제한 | | 3 | 10 | 3 | 16 |
| 후보자 기고 | | | 4 | | 4 |
| 총 계 | 12 | 35 | 47 | 9 | 103 |

* 여론조사 보도 위반으로 제재받은 22건 중 제16대 대선에서 제재받은 1건은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나머지 21건은 모두 여론조사보도요건을 위반한 안건임

4차례의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의 의결은 총 103건이 있었다. 이 중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한 안건이 51건(49.5%)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그 뒤로 여론조사보도요건 위반 21건(20.4%), 광고 제한 위반 16건(15.5%), 객관성 및 사실보도 10건(9.7%), 후보자 기고 4건(3.9%) 순으로 뒤따랐다.

여론조사보도요건에 대한 심의는 2016년부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여론조사보도요건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고 있다. 대선 선거관련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경우(심의기준 제8조제1호),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심의기준 제8조제2호) 또는 경쟁자 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심의기준 제8조제3호)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제18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거나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아 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사는 8건이 있었으나(객관성 및 사실보도 항목에 포함),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유로 제재받은 기사는 없었다.

광고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제재받은 사례 중 제17대 대선과 제18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13건은 모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한 의견광고였다.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광고에 대하여 제재한 사례는 없는 반면 후보자 저서 광고, 역학연구소 광고 등 상업광고 3건에 대하여 제재하였다.

3.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분석

| 선거명 | 의결 번호 | 시정 요구인 | 피시정 요구인 | 보도일 | 지면 | 기사 제목 | 결정 |
|----------------------|--------------------|-----------|------------|-----------------|---------|--|-----------------|
| 제16대 대선 (2002) | 2002 시심1 | 노무현 | 월간 조선 | 2002년 12월호 | 76~97 | '단독선두' 이회창 심층 인터뷰 내가 집권한다면.. | 주의 |
| | | | | | 98~113 | 김연광의 대통령후보 연구③ '정상인' 이회창은 국가를 정상화시킬 것인가 | |
| | | | | | 114~118 | 담당기자가 본 달라진 이회창의 면모 '이 못난 사람을 지켜주신 덕분에..' | |
| | | | | | 119~122 | 이회창의 작전 참모 유승민 | |
| | | | | | 123~125 | 미국, 김정일에 경고 : '그가 죽으면 당신도 죽는다' | |
| | | | | | 126~127 | 대선의 유일한 변수는 이회창에 대한 위해 가능성? 경호비상 걸린 한나라당 | |
| 제17대 대선 (2007) | 2007- 시심-1 | 이명박 | 경향 신문 | 2007. 10.30. | 5 | 대선후보 TV토론 왜 안될까 | 반론 보도문 게재 |
| | 2007- 시심-2 | 이회창 | 시사 IN | 2007 12.11. | 32 | 이회창 대선잔금은 판도라의 상자인가 | 반론 보도문 게재 |
| | | | | | 33 |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대선 뒤 재산 '쑥쑥' | |
| 제18대 대선 (2012) | 2012 대선-37 | 문재인 | 문화 일보 | 2012. 10.17. | 1 | "靑보관용' 盧-김정일회담' 盧지시로 폐기" | 각하 |
| | 2012 대선-42 | 문재인 | 월간 조선 | 2012년 12월호 | 62~73 | 金正日 앞에서 盧武鉉은 이렇게 말했다! | 취하* |
| | 2012 대선-43 | 문재인 | 조선 일보 | 2012. 11.27. | A5 | 朴-시급한 계층 우선, 文-전 계층에 평등 지원... 복지철학의 충돌 | 정정 보도문 게재 |
| | 2012 대선-46 | 문재인 | 조선 일보 | 2012. 10.23. | 16 | 盧 주재회의서 청와대 문건 목록 없애기로 | 기각 |
| 제19대 대선 (2017) | 2017 대선 -시심1 | 문재인 | 중앙 일보 | 2017. 4.13. | 34 | 한 달 후 대한민국 | 경고 |
| | | | | | 34 | 3주 후 대한민국 | |

* 2012대선-42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되어 취하함

제16대 대선부터 제19대 대선까지 심의위원회는 총 8건의 시정요구심의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이중 7건의 시정요구인은 야당 후보자였고, 1건의 시정요구인은 여당 후보자였다. 피시정요구인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가 5건, 종합주간지 1건, 종합월간지 2건으로 나타나며, 지역지 및 뉴스통신에 대한 시정요구심 의는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의 주장, 피시정요구인(언론사)의 의견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보도의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정도를 판단하여 제재여부 및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의 청구취지와 다른 수위의 제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구취지와 다른 수위의 제재를 하기도 한다.

4차례의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총 8개의 시정요구심의 의결 중 제재가 결정된 것으로는 반론보도문 게재 2건, 정정보도문 게재 1건, 경고 1건, 주의 1건이 있었다. 이중 반론보도문 게재 2건 및 정정보도문 게재 1건은 시정요구취지와 동일한 수위의 제재가 결정된 사안이었고, 경고 1건 및 주의 1건은 심의위원회의 판단 하에 시정요구취지보다는 약한 수위의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이었다.

그 외에 기각 1건, 각하 1건, 취하 1건이 있었는데, 이 중 취하 1건은 당사자 간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되어 취하된 것이었다.

4. 재심청구 의결현황

| 선거명 | 재심의결 번호 | 원심 의결 번호 | 재심 청구인 | 매체명 | 기사 제목 | 원심 결정 | 재심 결정 |
|----------------------|----------------------|--------------|-----------|-----------------------------|---------------------|-----------|----------|
| 제18대 대선 (2012) | 2012 대선 22 | 2012 대선19 | | 시민일보 | 안철수, 국민을 바보로 아나? | 사과문 계재 | 기각 |
| | | | | | 안철수,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 | |
| | | | | | 안철수 '불출마중용' 진실은? | | |
| | | | | | 안철수, '꿈수정치'부터 배웠나 | | |
| | | | | | 안철수, 킹이나 킹메이커나 | | |
| | | | | | 안철수 발목잡는 '안철수의 생각' | | |
| | | | | | 문재인, 안철수에 '책임총리' 추파 | | |
| 2012 대선 47 | 2012 대선37 (시심) | 문재인 | 문화 일보 | "靑보관용 '盧-김정일 회담록' 盧 지시로 폐기" | 각하 | 기각 | |
| 2012 대선 54 | 2012 대선46 (시심) | 문재인 | 조선 일보 | 盧 주재회의서 청와대 문건 목록 없애기로 | 기각 | 기각 | |

4차례의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청구는 3건이 있었으며, 모두 제18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청구된 것이었다. 자체심의 안전에 대한 제재결정에 대해 언론사가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이 1건 있었고, 후보자가 시정요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있자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이 2건 있었다.

제18대 대선 심의위원회는 재심청구인의 신청취지를 반영하여 재심청구를 심의하였으나, 원심결정 과정에서 심의기준을 오해하여 과도한 제재 결정을 하였거나 원심결정 이후 원심을 파기 또는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의 변화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재심청구들을 기각하였다.

5. 심의대상매체 비교

| 위반유형 | | 제16대 대선 (2002) | 제17대 대선 (2007) | 제18대 대선 (2012) | 제19대 대선 (2017) |
|------|-------|-------------------|-------------------|-------------------|-------------------|
| 일간지 | 중앙 | 27 | 27 | 31 | 24 |
| | 지역 | 59 | 77 | 100 | 106 |
| 주간지 | 종합 | 23 | 22 | 32 | 41 |
| | 지역 | 317 | 263 | 210 | 222 |
| 월간지 | 종합/여성 | 6 | 7 | 18 | 16 |
| | 지역 | - | - | 7 | 1 |
| 뉴스통신 | | 1 | - | 3 | 9 |
| 총 계 | | 433 | 396 | 401 | 419 |

대선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위하여 400개 전후의 심의대상매체를 모니터링해오고 있다. 심의대상매체의 수는 제16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433개였고, 제17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396개, 제18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401개였다.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대장에 등록된 매체 중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할 가능성이 있는 419개 매체를 선정하여 심의하였다.

제18대 대선 심의위원회에 비하여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중앙일간지의 수가 7건 감소하였다. 이는 2007년 및 2012년경 지하철역 등지에 배포되었던 무가지 7개 매체가 대부분 폐간됨에 따라 2017년 심의대상매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제16대 및 제17대 대선 심의위원회에 비하여 제18대 및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매체 중 지역주간지의 수는 감소한 반면 지역일간지, 종합주간지 및 뉴스통신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부



종합평가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제2장 결산좌담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 평가

선거기사심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효용:
선거시기 언론과 심의기구의 역할에 관한 소회



이은주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필자에게 19대 대통령선거는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민주주의와 언론, 소통과 참여의 정치, 그리고 여론이 무엇인지 새로이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더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언론의 책임과 규제 의 관계에도 주목할 수 있었다. 지난 3개월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정리와 제언을 담아 평가하고자 한다.

1. 19대 대통령선거의 특수성과 선거보도의 특성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정연구·김수정은 과거의 대선과 다른 특징들을 몇 가지로 서술하였다. 먼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서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유권자와 후보자, 언론 역시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검증과 집중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민주주의라든지 민주주의 참여정치와 같이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충분히 공감대가 이뤄진 분위기였다. 둘째, 보수정당 후보가 선두에서 떨어진 특징으로 인해, 보수 대 진보라는 이념 프레임이 선거과정에서 크게 작동되지 않았고, 영호남 지역주의 투표나 프레임, 출신지역과 연고 강조 등 지역감정의 자극 역시 상대적으로 덜 하였다. 이에 부실 검증 대통령에 대한 후회와 차기 대통령에 대한 책임과 기대가 커지면서 정책과 인물검증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증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새로운 정치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공정 선거 분위기 조성의 국민적 요구가 컸다. 이를 통해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주목, 시민들의 선거보도 감시 요구가 자발적으로 커지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정치참여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가짜뉴스 역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던 선거기간으로 평가했다(정연구·김수정, 2017).

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특수성을 이준웅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첫째, 부패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만들어낸 선거 정국이었다는 점이다. 촛불집회와 탄핵안 가결, 탄핵 결정까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후 60일 내 치른 선거는 그 진행 과정도 일사천리였다. 국정농단과 권한 남용, 정치적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번 선거의 배경이자 전경으로서 다른 사안이나 쟁점이 유권자의 관심을 뺏을 겨를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부패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하나의 사안으로 선거정국을 지배했고, 정당과 후보의 입지를 결정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과거의 이념논쟁이나 안보와 같은 긴장고조 변수가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지역변수 역시 전통적 구분처럼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초유의 5당 다자구도가 성립하며 끝까지 진행되었다. 과거처럼 정파적 분열이나 정략적 이합집산으로 정치공학적 행보가 주류가 되지 않은 채, 5자 대결구도가 유지된 선거과정으로 주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제6공화국에서 진행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새롭게 기여한 선거로 평가했다. 여기에 덧붙여 선거보도 속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통매체나 인터넷 매체에 속한 언론 모두

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요인을 추가했다(이준웅, 2017).

이때, 언론의 역할과 관련하여 김춘식에 따르면 대선보도 분석의 특징은 부정적인 요인이 여전했다. 지상파 3사와 주요 중앙일간지 선거뉴스 분석을 통해, 언론은 후보 동정 및 캠페인 전략, 네거티브 분석이 여전했음을 지적하였다.¹⁾ 후보의 정책 검증에는 소극적이었고, 정치를 전략적 게임으로 간주하는 게임스키마(판세 분석, 후보자의 네거티브 보도)가 강했음을 적고 있다. 신문의 경우 방송보다 후보정책공약 보도에 적극적인 언론사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보도에 더욱 치중한 점을 지적하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정책보단 지지율을 중시하고 인위적으로 양자구도화하는 사례, 타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단순지지율을 넘어 유권자의 가치와 정책에 관한 의견들을 전하는 여론조사 및 의견 등은 드물었다는 평가다. 이 기간 동안 언론은 선거를 통해 한국사회의 국가적 의제에 대해 토론하는 공론장을 제공하기보다 전략적 게임으로 이끌었다고 보았다. 후보자 이미지 프로모션 전략에 활용되는 도구나 의혹 증폭의 확성기 역할에 머물러 식견을 갖춘 유권자 양성에 기여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김춘식, 2017).

이준웅에 의하면, 19대 대선보도는 이전 선거와 다르게 언론의 경향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경향성은 언론이 견수를 잡아서 한쪽 방향으로 몰아치듯 보도하는 언론의 실천양식으로서 정파성이나 불공정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신문사간 노골적 이념전쟁이나 유권자가 예상하는 정치적 위상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논쟁이 이어졌으며, TV토론은 유권자에게 후보와 정당의 주장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가짜뉴스 공방의 증가는 언론과 유권자가 함께 사실 주장의 위험성과 사실 확인의 임무를 주목하게 된 시기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19대 대선 속 언론의 제 역할에 관해서 3가지로 특성화하였는데, (1) 특정 후보나 정당을 몰아붙이는 식으로 보도함으로써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2) 수차례의 TV 후보토론을 통해 후보의 주장과 정책, 인물의 평가까지 충실히 전달되었으며, (3) 후보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실체적 검증을 사실 확인과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조건을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19대 대선은 유권자가 후보와 정책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배우는 기회였고, 언론사 역시 기존의 관성과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유

1) 해당 분석은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지상파 3사의 저녁종합뉴스 및 5개 종이신문(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1면과 종합·정치 면에 게재된 사실보도만을 분석함. 편집자 주.

권자·시민들의 변화에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진단하였다(이준웅, 2017).

2. 선거기사심의현황과 특성

선거기사심의현황 분석에 앞서 선거보도의 중요성과 선거기사 심의의 정당성, 원칙과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보도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제도인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는 공직선거법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다. 특히 제한된 시간 내에 벌어지는 중차대한 선거는 자칫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정보, 왜곡된 정보가 유포될 경우, 이에 영향받은 선거결과에 대해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점의 제약이 있다. 선거결과에 불가역성을 고려해, 신속한 해법이 필요하므로 더욱 집중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거기사심의의 원칙과 기준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근거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기준은 심의기본원칙, 심의고려사항, 일반 심의기준, 세부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논쟁적인 것도 있으나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본원칙으로는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의무, 정치적 중립성을 들고 있고 일반 심의기준에서는 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비중, 매체의 발행부수와 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위반 여부,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언론사의 의도성 여부 등이 심의고려사항이다. 세부 심의기준을 통해서 다양한 기사나 보도문의 형식과 형태에 따른 제재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추이 및 이전 선거기사심의현황(18대대선/20대총선)과 비교

최근 6년간 주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보궐선거로 치러진 대선인 만큼 운영기간 자체가 80일로 짧은 기간이었다. 이 점을 반영하

듯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심의와 의결이 진행되었다. 18대 대선이 51건인데 비해 19대 대선은 10건이다. 한편 19대 총선(2012)과 20대 총선(2016)은 같은 기간 동안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에서 의결건수가 감소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지면 매체를 중심으로 한 선거기사심의를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표> 최근 6년간 주요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현황

| 선거명 | 운영기간 | 자체심의 | 시정요구심의 | 합계 |
|-------------------|---------------------------------------|------|--------|-----|
| 제19대 총선 (2012) | 2011.12.12. ~ 2012.5.11. (150일) | 107 | 23 | 130 |
| 제18대 대선 (2012) | 2012.4.22. ~ 2013.1.18. (270일) | 47 | 4 | 51 |
| 제6회 지선 (2014) | 2014.2.3. ~ 2014.7.4. (150일) | 206 | 20 | 226 |
| 제20대 총선 (2016) | 2015.12.14. ~ 2016.5.13. (150일) | 55 | 21 | 76 |
| 제19대 대선 (2017) | 2017.3.20. ~ 2017.6.8. (80일) | 9 | 1 | 10 |

선거기간을 중심으로 한 공적영역의 선거보도심의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결과를 살펴보면, 18대 대선에서 345건이었던 조치가 19대 대선에서는 282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면선거보도에 대한 심의보다는 적은 비율로 줄어들어 지면중심의 보도들에 대한 관심과 주목, 영향력 등이 점차 하락하는 경향이라는 점도 미루어 알 수 있다.

18대 대선 심의결과와 19대 대선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각각 51건(자심47, 시정4), 10건(자심9, 시정1)을 의결하였다. 위반유형별로 보았을 때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사례가 18대 대선에서는 15건(29.4%, 자심12, 시정3), 19대 대선에서는

6건(60%, 자심5, 시정1)이었다. 18대 대선에서는 여론조사보도요건 위반 사례가 12건(23.5%) 있었고, 그 외 광고제한 위반 사례는 18대 10건(19.6%), 19대 3건(30%)씩 있었다. 18대와 19대 대선기사 위반 유형 중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각각 9건과 1건이었고, 18대 대선에서 ‘기고 등’ 위반이 4건(7.8%)을 차지하고 있다. 결정 내용 중 18대 대선기사 심의는 자체심의에서 사과문게재 1건을 제외하고 46건이 모두 경고 이하(경고8, 주의27, 권고11)이다. 시정요구심의 결정내용은 정정보도문게재 1건을 제외하고 3건은 모두 취하, 기각, 각하로 결정되었다. 19대 대선기사는 10건 모두 경고 이하(경고3, 주의3, 권고4)에 해당한다. 대통령 선거였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기술적인 면 외에 설명할 것이 거의 없으나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이 절반이 넘는다는 점, 결정내용의 경우 경고 이하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18대 대선 당시 1건의 사과문 게재가 있었으나,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17년 2월 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사과문게재는 삭제되었다. 이를 반영해 현재 제재조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심의·의결)를 통해,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또는 권고로 결정할 수 있다.

성격은 다르지만 가장 시기적으로 가까웠던 20대 총선(2016)과 이번 대선을 비교함으로써 최근 선거기사 심의의 주요 특성과 제안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20대 총선의 선거기사심의백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선거보도의 핵심기준인 객관성, 형평성, 공정성의 기준과 관련해 구체적 위반 유형들을 살펴보면, 허위사실 보도나 무근거 추측보도,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할 정도의 기사와 사진의 양적 편파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편파의 과정에서 언론사들은 특정 후보자만의 보도자료를 모두 기사화하는 경향, 홍보지면으로 활용하는 측면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서는 언론의 취재원 접촉과 현장 취재, 반대 측이나 다른 후보에 대한 별도 취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에 의존한 취재 부실은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불리할 정도의 질적 편파 역시 언급하고 있다. 특정후보에 대한 과장된 우호적 표현 또는 지지선언을 하면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 검증되지 않은 보도, 특정인물에 대한 비방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칼럼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노골적 비판 기사나 이슈와 관련해 반론이 부재한 보도, 선거에 필요한 뉴스가치보다 사소하거나 일상적인 가십 기사 등도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광고나 저술과 관련해 언론사들의 선거

관련 보도 규정에 대한 무지에 따른 위반사례, 여론조사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도하여 위반한 경우 등이었다(이종혁, 2016).

이상의 선거기사심의내용들과 관련해 심의기준 적용의 특성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20대 총선의 경우, 자체심의 결정은 공정성 및 형평성 항목 위반이 70.9%, 기고 16.4%, 광고제한 7.3%, 객관성 및 사실보도 5.5% 순이었다. 시정요구심의의 제재 결정 중에는 정정보도문 게재 2건, 경고결정문 제재 3건이 있었다. 경고결정문 게재 이상의 제재조치는 모두 시정요구 심의건이었다. 20대 총선의 경우도 심의대상 대부분은 경고 이하로, 자체심의는 경고 38.2%, 주의 60.0%, 권고 1.8%였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심의에서는 경고 10.3%, 주의 54.2%, 권고 30.8% 였던 것과 비교하면 제재수위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의비율은 유사하지만 권고가 줄어든 반면, 경고 결정은 늘어났다. 그 이유는 언론사가 복수의 기사나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위반건수가 많아질 경우 제재 결정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실제 경고나 주의 결정은 언론사에 통보하는 수준으로 그쳐 선거보도 태도를 개선시키려는 효과에는 우려를 나타냈고, 제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이미 선거가 끝난 뒤라 의미가 적어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였다. 또한 정정보도문 게재나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역시 심의위원회의 사실 관계 파악 권한이 없는 점, 실행하지 않더라도 추가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역시 지적했다.

2) 19대 대선 선거기사심의현황: 위반사유와 제재결정

이번에 주목할 점은 선거보도 일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사항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한 점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인 보도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만 선거기사는 선거 당시의 심의·제재결정 등이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영역이다. 제19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현황, 경과, 위반유형 및 제재결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선거보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환경 속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

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어 제7조에 따르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에서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답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역시 “선거기사(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선거기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과를 보면, 운영기간은 3월 20일부터 선거일 5월 9일을 포함한 6월 8일까지였다. 대선 심의위원회 회의는 5회 실시하였고, 심의대상매체는 총 419개로 지면매체 410개, 뉴스통신 9개이다.

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제재 결정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고조치 4건 중 3건이 광고제한 위반 유형이다. 중앙일간지와 주간지, 지역일간지 각 1건인데, 특정 후보자에 대한 독자적인 광고가 아니었고, 유·불리에 대한 의도성이나 유권자에게 미칠 영향력보다는 단순히 광고제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낮은 제재 수준으로 의결하였다. 나머지 1건의 지역일간지는 칼럼으로 공정성 기준만을 위반하여 권고로 의결하였다.

주의 3건 중 2건은 지역일간지의 기사였다. 언론사 측의 소명에서도 밝혔듯 특정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정서와 독자층을 의식해 일부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 지지 내용이 다소 많았다. 일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누락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유형이었다.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기에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의로 제재하였다. 중앙일간지 1건은 기사나 칼럼이 아닌 매일 반복적으로 게재되는 독자 참여유발 게임성 코너로서 지면 분량은 적은 편이었다. 매일 지속되던 일련의 구성과는 다르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사진과 예시문의 차별이 있었다. 선거 당일 게재하여 위반에 대한 언론사의 주의 환기가 필요했다.

경고 3건 중 2건은 주간지로 여러 기준을 위반하였고, 기사와 칼럼 및 기고의 수준에서 부적절한 감정적 표현과 특정후보자에 대한 비방,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 원색적이고 과장된 서술 등 전체적으로 불리한 견해의 의도성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언론사 측이 위반사실에 대해 동의·인정하였고, 재발 방지 의사를 밝혔으며 외부 필진의 기고라는 점을 소명하여 이를 감안해 경고로 의결하였다.

나머지 경고 1건은 시정요구심의의 안건이었다. 시정요구인은 경고결정문 게재를 요구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경고조치한 것이다. 시정요구인 측은 해당 신문의 칼럼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가정하여 ‘당선 한 달 후’, ‘당선 3주 후’ 모습을 상상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성 내용에서 후보자를 부정적으로 폄하했으며, 편향적인 표현과 일부 허위사실을 게재해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유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상황에 대한 예측일 뿐 불리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자신의 표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으며, 상상이라고 전제하였으므로 이를 허위사실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변했다. 이를 종합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상이라 보기엔 특정 후보자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내용의 일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사 칼럼을 연속적으로 게재한 점, 해당 신문의 영향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공정성과 객관성 및 사실보도, 특집기획 기사·칼럼 및 기고 등 기준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다.

이상과 같은 19대 대선 심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전체 심의건수가 많지 않았지만 위반 유형은 다양했다. 결정유형은 대체로 경고 이하로 하여 언론사 측에 대한 주의 환기와 같은 예방적 조치를 하여 동일한 기준 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이었다. 지난 18대 대선과 비교해 심의활동기간이 짧았던 점을 감안하면 심의 건수가 적은 편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대선은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시정요구심의보다 자체심의가 많은 것 역시 대선 심의의 한 특징이라는 의견도 있다.

선거 진행 과정에서 쟁점화되고 논쟁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을 통해서는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 정도로 불공정한 수준의 선거기사들이 심의·의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에 대한 추론과 평가를 정확히 하기는 어려우나 세 가지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터넷매체에 비해 지면신문이나 뉴스통신의 경우 언론으로서 일정 수준의 자질과 품격을 유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심의기준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

째, 지면매체보다는 방송이나 인터넷 등 타 매체 영역의 선거보도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현실의 반영일 수 있다. 선거관련 방송이나 인터넷보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면기사의 중요성은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서술한 19대 대선이 지닌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3) 19대 대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의결현황과 비교

선거기사심의현황을 인터넷매체 심의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거기사심의 제재 결정의 총수가 지면의 경우는 인터넷보다 현저히 적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의 경우 자체심의 비중이 18대 대선(2012)에서는 99.4%였으나 19대 대선(2017)에서는 81.2%로 감소한 반면, 후보자의 이의신청²⁾은 18대 대선에서 0.5%였으나 19대 대선에서 17.7%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선거기사심의의 시정요구심의가 1건인 것과 비교하면 인터넷 언론에 대한 주목과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추측된다. 이의신청 비중의 증가에 관해 정연구·김수정(2017)에 따르면, 후보자나 정당에서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을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에 따라 증가한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다.

19대 대선 관련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결과와 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치현황은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각 등 선거기사심의 제재유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경고문 게재와 같은 다소 높은 수위의 제재결정은 적었고, 경고 이하, 특히 주의보다 낮은 단계인 공정보도협조요청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보면, 선거기사심의와 마찬가지로 강한 제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연구·김수정의 서술을 인용하면, 경고문게재는 5건(1.8%)이고, 가장 많은 결정은 공정보도 협조요청으로 207건(73.4%)이다. 총 282건 중 경고가 22건(7.8%), 주의가 28건(9.9%), 기각은 20건(7.1%)이다. 18대 대선과 비교하면, 전체 위반건수는 줄었으나 주의가 많았던 이전과 달리 공정보도 협조요청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정연구·김수정의 분석결과와 지적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심의 위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제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심의'와 유사한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선거보도에 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편집자 주.

반유형은 공정성, 객관성, 여론조사, 사진·동영상 등이다. 공정성 위반은 역시 특정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나 반대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를 역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반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배치, 부각하는 경우, 선거 관련 대담이나 토론 중계 또는 보도에서 각 참여자 간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객관성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실의 과장·부각 혹은 축소·은폐 보도나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는 객관성 위법 여부에서 중요한 판단 가치로 삼았다(정연구·김수정, 2017).

여론조사의 경우, 당선 가능성, 지지 응답자의 순위, 득표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었음에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결정적”, “승리한다” 등의 단정적인 제목과 보도내용이 심의대상이 되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혹은 보도할 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만을 보도했는지 심의하였다.

3. 선거기사심의와 위원회 관련 쟁점

선거기사심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논의가 있었던 쟁점들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규정에서 명시하고, 구체화시킨 기준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사가 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은 언론인, 독자, 심의위원, 전문가 등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그 원인을 언론 보도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과 같은 원칙과 기준 개념의 추상성이나 모호성에서 찾는 학자들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다. 현재의 쟁점에서 주목하는 것은 개념의 추상성보다 위원 간의 인식과 판단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다양할 수 있고, 차이는 필연적이라는 점에 집중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세부적 기준들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기사에 대한 심의 적용과 판단에서 다를 수 있다. 즉 동일한 기사나 콘텐츠 역시 하나의 맥락으로 읽혀질 수 없다면, 다양한 콘텍스트와 함께 독자와의 관계를 통해 해석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합의를 이끌어가는 토론과정을 통해 동의와 협조가 전개되며, 좀 더 다수의 의견이 타당할 때는 소수의 의견을 고려한 단서를 붙여 다수 견해를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가장 완벽한 심의기준, 이상과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정교화하고, 구체화하며, 누구나 동의

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세부 개념으로 낮춰 분화하여 설명하는 차원의 해법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입장이다. 물론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공정성에 관한 더 깊고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공정성 기준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준과 사안의 적합성, 최종적인 판단에 있어서 주장과 함께 설득, 토론을 통해 합의된 결론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위원들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이며 신중한 판단이 중요할 것이며, 각 영역의 전문성과 신뢰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 될 것이다.

둘째, 선거보도관련 방송, 신문, 인터넷매체를 심의하는 기구가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일원화나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중복 심의와 상이한 제재결과의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최진호와 이재진(2016)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동훈과 반현(2012) 역시 심의위원회 간의 법률적 위상과 역량의 차이가 크고, 디지털 시대에 매체가 양적으로 늘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어 통합보다 더 중요한 쟁점들이 있음을 제안한다. 즉 정치적 중립성, 제도의 안정성, 법률적 실효성과 같은 영역들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통합기구보다도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에 대한 강조도 우선적으로 제안되고 있다(정연구·김수정, 2017).

이상의 논의와 관련해 필자 역시 통합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일한 기구가 담당하기에는 현재의 선거보도 매체들의 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또한 불공정 행태의 대상과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다. 따라서 제도나 조직과 관련해 위로부터 아래로의 통합기구나 통합 논의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인 감시와 심의가 가능한 단위들이 작게, 여럿으로 확산되고 현재 조직의 운영과 성장 과정에서 상호 느슨한 연대의 공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찾아갈 것을 기대해 본다. 해당 기구들은 각자 활동을 유지하되 심의된 내용들이 함께 링크되고 확산, 검증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간혹 서로 다른 심의기구 간의 유사 사례에 대한 다른 판단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앞서 다양한 해석과 판단이 가능하다는 전제와 마찬가지로, 로봇이나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위원회에 모여 결정하지 않는 한 다른 견해와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다르게 제재 결정이 되었다면, 그 결정 자체가 아니라 그 결정의 근거와 내용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를 통해 언론과 유권자 모두의 자정과 비판적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선거보도 심의 대상, 범위 확정 문제, 제재의 정당성 등에 대한 고민은 증가하고 있다. 선거기사 심의의 영역은 대체로 신문법의 대상으로 한정된 영역이지만 최근 선거보도는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선거과정에서 가짜뉴스나 혐오발언 등이 시민과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는 사례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과 문제점은 고려돼야 할 사안임에는 틀림없으나 과연 이것이 심의와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숙고가 필요하다.

넷째, 일부에서는 기본적인 언론 기사의 품질과 언론인의 자질에 대한 문제제기, 좀 더 강한 제재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선거보도라는 엄중한 시기, 우려스러운 기사가 끼칠 악영향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을 강력히 피력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전히 선거 시기라는 특수하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도에 대한 심의 수준을 결정할 것인지, 현재의 심의위원회 운영의 관행에 대한 후속적 고민들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4. 선거보도와 선거기사심의에 관한 제언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정보와 콘텐츠는 지면을 넘어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SNS로, 1인 미디어로 확장되고 있다. 선거보도 역시 언론의 공직선거 의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범주의 경계를 넘나들며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이나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과 참여 역시 높아가고 다양해지고 있다. 소위 전문가인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뉴스를 제공, 편집, 확산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는 언론인을 넘어서는 전문가, 시민의 참여와 판단들이 적극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꾸며진 가짜뉴스의 범람과 확대가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더욱 더 교묘해진다. 따라서 즉각적인 팩트 체크가 부족할 경우 모든 시민과 유권자, 뉴스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변화하는 환경과 함께 미디어, 정치, 시민, 그리고 제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우려를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가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미국 대선과정에서도 나타났고, 5월 프랑스 대선에서도 드러났다. 9월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개별 나라의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짜뉴스 문제는 심상치 않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한 상원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통할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진민정, 2017) 독일 역시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을 규제할 목적으로 사회적관계망에서의 법 시행 강화를 위한 법(일명 네트워크시행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만들어 내각 의결을 거쳤고,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심영섭, 2017).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사회적 반응 역시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전한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규제기준의 모호성, 내용의 삭제나 고액의 범칙금 등은 검열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위법적이지 않은 내용물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삭제될 수밖에 없고,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는데 이 역시 동의할 만하다. 결론은 입법화 시도를 통한 과정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공적 토론의 활성화와 성숙한 시민들의 비판적 수용으로 전개될 양상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동일할지라도 이를 규제나 제재의 영역으로 제도화하는 문제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역시 결정이 아니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과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아닌 신뢰할 만한 뉴스를 찾아가는 공중의 몫으로 남겨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 공정보도의 의무 등은 선거기사 심의와 같은 규제만이 아니라 선거보도에 관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강화와 다양한 리터러시 공동체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독자와 시민, 자유롭고 소중한 권리를 민주적으로 행사하며 국가의 책임을 함께 만들어가고 지켜가고자 하는 유권자들에게 선거보도에 관한 리터러시, 수용과 참여의 교육,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미디어 콘텐츠, 뉴스와 저널리즘, 특정 선거보도와 같은 다양한 정보와 깊이 있는 해석을 하기에 지면매체는 이미 한정되고 주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인터넷과 모바일,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생산되고 유통, 공유되는 정보가 차고 넘친다. 이렇듯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언론사들은 공정하고 균형 있으며, 품위 있는 보도를 통해 언론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 성취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 때문에 언론사들이 쏟아내는 보도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할 것이며,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정한 언론이 주목받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선거보도 역시 매체사와 언론인에게 자율적, 예방적 수준의 제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즉 깨어있는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리터러시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과 참여가 함께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은 법과 제도, 규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과 공적접근으로 가능한

영역, 시민단체나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영역, 자유롭게 자율적인 시민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는 영역들로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대이다. 제재의 수준은 최소의 기준으로 삼고,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선거보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능동적 교류가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시대에 진입했다.

최근 선거보도에서 부상하는 관점 중에 하나인 시민저널리즘 측면, 즉 유권자 프레임에 따라서 비판과 제언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과 제언 속에서 언론은 스스로 어떤 언론이 되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언론은 자유와 책임을 위해 사실과 진실을 찾고자 노력하고, 시민과 공중을 통해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충실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시민은 스스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여 정보와 해석을 찾아 다가서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정책과 제도는 유권자가 성숙하고 교양있는 시민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혁신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약력

서강대 신문방송학 박사
 한국언론재단 객원연구위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선임연구원
 현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김재영·이승선(2016). 제20대 총선 인터넷 선거제도 심의평가와 제도 개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 선거제도 공정성 평가 및 심의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발표문.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원회·한국언론학회.

김춘식(2017). 한국대선제도 현황 및 제언: 정책 검증 부족하고 네거티브 공방 치중, <월간신문과방송>, 5월호, N.557. 한국언론진흥재단.

문종대(2014). 심의위원 평가: 선거기사 심의기준과 제재에 대한 제언,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송인덕(2017). 선거여론조사의 진화와 한계: 휴대전화 활용으로 정확성 높아져·'공표금지'는 개선 필요, 특집: 2017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보도, <월간신문과방송>, 6월호, N.558. 한국언론진흥재단.

심영섭(2017). 독일총선관련 언론보도와 이슈: 가짜뉴스 난무... '가짜뉴스방지법'추진, <월간신문과방송>, 5월호, N.557. 한국언론진흥재단.

이동훈·반현(2012). 국내 선거제도 심의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언론과법>. 11권2호. 한국언론법학회.

이중혁(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이준웅(2017). 제19대 대선제도 총론: 확 바뀐 언론, “경향성” 줄어들고 “팩트체크”까지, 특집: 2017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보도, <월간신문과방송>, 6월호, N.558.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준웅(2012). 제18대 대선 선심위를 마치며: 선거기사 개념과 심의기준에 관한 소견,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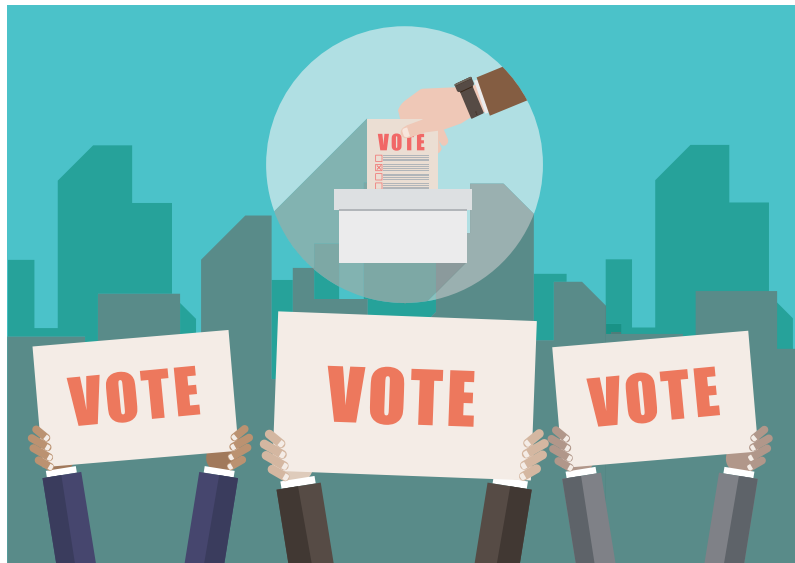
정연구·김수정(2017). 디지털시대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조건: 제19대 대선제도 평가 및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19대 대선 선거제도 평가 및 심의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발표문.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원회·한국언론학회.

진민정(2017). 프랑스대선제도와 가짜뉴스: 언론, SNS, 정치권, 교육계 모두 '가짜뉴스'와 전쟁, <월간신문과방송>, 5월호, N.557. 한국언론진흥재단.

최진호·이재진(2016). 선거보도 심의 및 심의기구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2004년 이후 대선 및 총선 보도에 대한 중복심의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법>. 15권2호, 한국언론법학회.

언론중재위원회(2017). <선거기사심의편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http://www.pac.or.kr/kor/pages/?p=69&b=B_1_6&cate=PD04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 현황: 제18대 대선 및 제19대 대선 의결 현황 자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2장 결산 좌담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일 시 2017. 6. 2.(금) 11:00

장 소 위원회 심리실

참석자 고승우 (심의위원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윤원구 (부위원장,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김 당 (전 오마이뉴스 편집주간)
 박철규 (명지대 초빙교수)
 이은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강신업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변호사)
 김화성 (전 동아일보 부국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7년 6월 2일 결산좌담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성과를 최종 평가하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표현의 자유를 통한
언론의 자율성과
심의위원회의 제재를 통한
타율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고승우 심의위원장

심의위원회는 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공정성 기준을 통한 심의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FCC에서는 30여년 전부터 공정성 기준을 제외했습니다. 선거기사를 심의할 때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정성 기준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한 제재를 점차적으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론에게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준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율성과 심의위원회를 통한 타율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 기준의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고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윤원구 부위원장

심의기준 중 객관성 기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 스스로는 물론 심의기구에서도 꼭 필요한 심의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정성의 경우는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언론사 자체가 어느 후보, 어느 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실, 논평, 칼럼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언론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표현하는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을 보았을 때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언론 스스로 자정능력을 통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준으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제재하는 것을 완화하여 유권자가 선거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고 보다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상의 공정보도의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이르다면, 공정성 기준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가짜뉴스가 범람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가짜뉴스 안건이
없었던 것은 다행

김당 위원

이번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치러진 관계로 총량적으로 보았을 때는 안건이 적은 면이 있습니다. 운영기간의 짧아 심의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아쉽습니다. 의결한 안건들은 대부분 자체심의 안건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심의였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가짜뉴스가 범람했습니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부터 가짜뉴스가 성행하면서 프랑스나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가짜뉴스로 인한 안건은 없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일 전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가짜뉴스가 더욱 횡행하고 가짜 여론조사결과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언론의 자정능력도 상당해져

시민들도 충분히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선거보도를 소화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

박철규 위원

저는 심의위원이 되기 전에는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가 충돌할 때에는 보편적 가치가 우선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다보면 결정을 하기에 고민됐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구현되기는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가진 것은,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언론의 자정능력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으로서 판단하는 제가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이면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선거보도를 소화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경고 등 낮은 수준의
제재조치를 통해서도
언론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적절한 제재였다고 판단해

이은주 위원

심의위원회가 출범되고 마무리하는 오늘까지 돌아켜보면 정정보도문 등을 게재하는 수준의 제재조치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고의성, 반복성, 지속성 등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가 경고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언론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정노력을 하도록 신호를 준 것은 적절한 제재였다고 판단됩니다.

선거기사 심의 중 전국지와 지역지, 일간지와 주간지 등 매체들의 영향력을 차별화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중앙지나 일간지가 갖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았는데, 지역지나 주간지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높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매체의 영향력을 어떻게 차별화하여 평가할지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만드는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NS와 같은 비제도적
언론의 파급력이 커지는
언론환경에 맞추어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킬 방향을 모색해야

강신업 위원

저는 제도적 언론과 비제도적 언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도적 언론은 양식도 있고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비제도적 언론이면서 언론만큼 파급력이 있는 1인 방송과 SNS가 있고, 그곳의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SNS에 글을 쓰면, SNS를 통해서 그 내용이 퍼져나갈 뿐 아니라 기사화되는 방식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제도적 언론이 선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는데, 중앙일간지보다 큰 영향력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언론환경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이 6천개에 달할 정도로 언론생태계가 바뀌어가고 있고, 언론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매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맞추어 그 역할을 더욱 발전시킬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쇄매체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제설정 면에서는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

김화성 위원

인쇄매체의 영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SNS나 인터넷매체가 언론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인쇄매체만 움아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쇄매체의 영향력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의제설정의 역할은 여전히 강해 보입니다. 인쇄매체가 의제를 설정하면 그것이 SNS를 통해서 퍼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면매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별개로, 심의위원회의 제재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이 아쉽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하지만 보통의 경우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습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 심의위원회에서는 한 언론사에 경고 조치를 했는데 다시 경고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고를 받아도 큰 영향이 없으니 심의기준을 계속 위반하는 것 같습니다. 제재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은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4 부



심의 의결사례



제1장 자체심의



제2장 시정요구심의





제1장 자체심의의



1. 경고

| | |
|--------|---|
| 의결번호 | 2017대선-자심4 |
| 언론사 | 주식회사 미래한국미디어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 4층 대표이사 김범수 |
| 심의대상기사 | 미래한국 2017년 4월 5일자 8~14면 「정권이 바뀐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및 26~29면 「5·9대선은 체제수호 vs 반체제 전쟁」제하의 칼럼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의 이념에 대해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는 칼럼을 게재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7조(정치적 중립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도 내용

정권이 바뀐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중북좌파세력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파쇼사회로 전락

김정은 미래한국 편집위원

2017년 5월 9일. ‘고영태-손석희 게이트’를 빌미로 ‘언론의 난’이 일어나고 마침내 ‘탄핵반란’을 일으킨 지 198일째 되는 날. 거짓이 참을 이기고 어둠이

빛을 가려 끝내 정권마저 바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있어서는 아니 되는 그날이 오면 애국태극기 물결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 지옥으로 가는 묵시록과 대한민국을 살릴 아마겟돈의 괴로움을 곱씹으며 풀어 나가보겠다.

묵시록이 된 ‘그 날이 오면’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아 피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한창 젊었을 때 아주 좋아했던 노래였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광주학살 사진전을 진실이라 철석 같이 믿었던 날, 수많은 민주열사들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고 불렀던, 참말 피맺힌 노래였다. 그러나 그러나 그 노래를 30년이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부를 줄이야 어찌 꿈엔들 알았겠는가. 결코 와서는 아니 되는 그 날이 와버렸다. 3월 31일 결국 대통령은 구속

되었다. 애국의 길이나 노예의 길이나 ‘코리아 아마겟돈’을 앞두고 고경표 애국열사, 조인환 애국열사, 김해수 애국열사, 이정남 애국열사, 김완식 애국열사. 다섯 분의 영정 앞에서 었드려 빈다.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저희가 30년 앞서 그리 간절히도 바랐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반역의 운동권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나라를 집어삼켜 끝내 애국열사들까지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열성조께 아뢰오니 저희가 지은 죄, 저희가 저지른 잘못을 영원히 돌에 새기소서.”

이제 종북파소정권이 들어선다

80년대 운동권들은 전두환 정권을 파소정권이라 불렀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70년대와 달리 내놓고 스탈린 도덕공감성주(감일상)를 따르며 폭력행위를 기피하고 화해방을 인정한 80년대 운동권들에게, 돌이켜보면 전두환 정권은 참으로 순화시킨 독재정권이였다.

COVER STORY

정권

정권이 바뀐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종북진보세력이 자기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파소시력으로 전락



김정은 40대 초반

2017년 5월 9일 '그양태손자의 계보'를 발표해 '연호의 난'이 일어나고 마중대 남북회담을 일으킨지 100일이 되는 날, 거짓말을 하고 이름이 잘못이 끝내 정권이 바뀌게 된다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아서는 아니 되는 그날이 오면 애국대구가 물결을 어떻게 깨워야 할까. 저속으로 가는 사투리와 대한민국을 실패시켜줄 것의 괴로움을 감당하며 살아 나가야겠다.

목사목이 된 그날이오면

한말의 꿈은 아니라고 오랜 디한 후에 내 형제 뵈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한참 강물로 흘려 고된 밤방을 함께 흘려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아 피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한창 젊었을 때 아주 좋아했던 노래였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광주학살 사진전을 진실이라 믿었던 날, 수많은 민주열사들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고 불렀던, 참말 피맺힌 노래였다. 그러나 그러나 그 노래를 30년이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부를 줄이야 어찌 꿈엔들 알았겠는가. 결코 와서는 아니 되는 그 날이 와버렸다. 3월 31일 결국 대통령은 구속되었다. 애국의 길이나 노예의 길이나 '코리아 아마겟돈'을 앞두고 고경표 애국열사, 조인환 애국열사, 김해수 애국열사, 이정남 애국열사, 김완식 애국열사. 다섯 분의 영정 앞에서 었드려 빈다.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저희가 30년 앞서 그리 간절히도 바랐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

COVER STORY 9

희 같은 반역의 운동권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나라를 집어 삼켜 끝내 애국열사들까지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열성조께 아뢰오니 저희가 지은 죄, 저희가 저지른 잘못을 영원히 돌에 새기소서."

이제 종북파소정권이 들어선다

80년대 운동권들은 전두환 정권을 파소정권이라 불렀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70년대와 달리 내놓고 스탈린 도덕공감성주(감일상)를 따르며 폭력행위를 기피하고 화해방을 인정한 80년대 운동권들에게, 돌이켜보면 전두환 정권은 참으로 순화시킨 독재정권이였다.

생각해보라, 우리 국민들이, 북동으로 각기각기시절을 마치 시키고 광양 현도들의 골짜기 되어 나라를 뒤엎는 도사지마다 전쟁을 벌이겠다는, 이식기의 동진단 실패를 할었을 때 얼마 나 놀랐나. 그런데 80년대 운동권들은 동맹으로 100조적이었다.

그럼에도 전두환 정권은 반체제 반국가시범 단속이라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직선제 대통령이 아니라 는 강박 관념 탓에 늘 여론을 지나치게 신경 썼다. 그 덕분에 80년대 운동권은 뿌리 뽑히기는 커녕 무력투쟁 자라 1980년에 이르러 이미 대학가에서 반국가란 말은 사라져버리고 '영기 고풍'이 당연시되어 버렸다.

다시 말해 광양 현도들과 총부리를 거는 반공 자유민주주의의 한어 형평의 나라'에서 반공파 미국이언 말이 나쁜 말로 단태당파 비뚤던 것이다. 그러나 익숙하던 말은 5공은 파소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광안 파소정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멀리 갈 것 없다. 물 세 가지 교회사 역사교과서의 출세 국정 역사교과 시 채택 과정을 보라. 전방조는, 전방조는, 연노조는, 연노조는, 극우사태종북 부패운동권은, 호통판판은 한 곳의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다.

100% 부류에 100% 찬성으로 이뤄지는 조인환주주의 인연 공화국의 산기치된 것으로 그들이 그리 해야 한다고 믿거나 말하는 곳에서 다양성이란 자유민주 존재할 수 없는, 진보의 반대만 변동할 뿐이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 헌정사서 말...

어졌다. 2004년 첫 탄핵소추안 가결과 2008년 광우병 난동 때 언론방송의 마녀사냥은 그저 맛보기였다. 그때는 마녀사냥만 했지 인민재판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그리고 2016년 탄핵 반란 때는 다르다.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모든 미디어가 마녀사냥 하고 아예 인민재판까지 해버렸다. 딱 한 곳 MBC에서 점령군인 언론노조에 펍박 맞으며 겨우 태극기집회 몇 컷 보도했다고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되었단다.

MBC 방송토론에서 사회자원 논설위원 실장을 앞에 두고 겁박하는 문재인을 보라. 다시 MBC를 자랑스러운 광우병 난동의 MBC로 돌리란다. MBC를 SBS와 같은 노영방송으로 뒤집으려다 쫓겨난 이들을 해직언론인이라 마치 그 무슨 민주화유공자처럼 불러대며 복직시키란다. 그래서 이 모든 문

제를 없애려 '언론방송 노조장악법'을 만들자 밀어붙인다. 종북파쇼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방송인터넷을 단 하나의 미디어 밖에 없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과 똑같이 만들 것이다.

블령선인이 될 애국태극기 물결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준도 생겨날 것이다. 이미 청문회에서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 간첩 다루듯이 공개 사상 검증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앞으로는 촛불시민혁명에 나갔느냐 그를 어찌 생각하느냐 물을 것이다. TV에 나오는 고위급 공직자만 아니라 언론노조 직할의 언론방송, 인터넷 취업과 인사고과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극단에서부터 큼직한 무대까지 모든 연극영화문화예술에서 마침내 사회

12 COVER STORY

2015년 4월 15일

19 > 다. 그 전노동자 정부가 불리는 연노송의 나라에서 당선되면 시범을 보일 것이다. 온 이고 머리 돌아가면 수단말법 거저러 없게 될 나니 내로써 바꿔 나간다. 그의 뒤엔 비리 흥기만 가진 게 없는 당선 자처는 어느 개인에 가서 용이 되겠다.

그때도 약자들이 온 별들라고 그래서 바지사 약용의 선택지가 기다려 있다. 제2 노조가 온다. 트럼프는 "전라적 인내 안 이용으로 시간만 잃고 파도 오마가 아니다. 그리고 희생탄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인제철선이다. 그래서 시드를 갖다놓는 것이다. 전쟁이 나면 왜 미군이 가장 먼저 죽어야 하는가, 알성이 트럼프라면 그의 해는가. 그래서 주한미군을 지키는 병이되어 사드라. 그들이 살아야 싸우는 법은 갖지 않거나 아닌가. 그런데 그의 싸우겠다는, 내전 같은 전사자전투에 연도 맺었다. 김정운은 우리민제까지 잘해줬었다. 주권이 온이 마치고 안이동행이 사라지면 달리는 순식간에 다 빼앗긴다. IMF를 뺄게 되었다. 그때 무슨 수로 돈을 벌었다.

그렇게 전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이 느닷없이 제너수했다가 되고 우왕들이 돌 돌린 자수의 나라가 되어 모두가 거저러 된다면 김정운은 굳이 사투를 꺼낼지 않다. 여자의 날조선에서 알이아 통진당이 될것이라고 그리고 대한 고정강선에서 아예 드러내놓고 공작을 할 때니 그들은 손에 피를 묻히며 백인들이 그사이에 날조해서 남은 국력을 세 글로써 빼앗았이 뺏아들 일 것이다. 그의 사퇴의 부름 들리며 국가유공자에 살아 있는 자유인 이면의 노예화하며 죄를 짓기 아예 불능한 남조선 반통들에게 철저의 행방과 파장을 거저러 할 것이다.

태극기가 있었단 걸때 마저 후보에서 밀린 지금, 태극기 세력은 그때는 세 갈래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주저않는 것이다. 대신 보아왔이 아니다. 화려한 월 10억 들어와 왔다. 둘은 레지스탕스다. 이래 캄보디 처럼 캄보디 폭을 일으키는 것이다. 셋은 그대도 비열연대로 선거 쳐보는 것이다. 이것은

정권을 빼앗기엔 아성기들의 젊은 이휘저지 않을 것이다. 숨길 수 없는 자처와 아들이 이휘는 대한민국의라되어 아이라 제 목숨을 지책하는 라되어 될 것이다. 아이라 그런 일추그 자신이 불가마에 타야 하는데 타고 보니 불상아일 수가 있다. 앞으로 태우고 죽을의 곳만큼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지도 모르겠다. 그 그들은 지난 30년 단 한 초래도 그 정치에서 순해 본적이 없다.

머리 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배양 콜로로 빌라가면서도 아 왕복 되었던 나라사랑하는 마음의 흐름이다. 뛰어난 권력자가 어 흐름을 바랄 수 없다고 믿는다. 그 할 수 있다면 현실에서 바로 도전도 것이다. 인내에 개 약권이 되어야하면 미의도 사 알들과 함께 나를 지식인이라는 이들도 할 게 태극기까지 문경에 탄핵 당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물라지 빼는 이들에게

물라지 보라. 1-2월 그 급작같은 때에 자유한국당이 무슨 짓을 했다. 그때 당 이름 바꾸려고 양광한 것 하지 않고 '고양태손석회계'로 특유를 많이 죽이려 빼달렸으면 현재 김정인들이 그 리 한백만 80 백억의 담합 까지 저 뺏겼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한국당 물론 무라웠든 마음이 풀말에 가졌었던 규정이 어쨌든 단행문헌의 엄할한 부자자들이 되었다. 그 인제적이었던 나를 지식인들은 무었을 했다. 그때들이 연세 태극기 문 손들었다. 내를 뺏겼고 지식인들이 많다. 티는 간첩자제 혼수 물 일이나니머도 틈을 만날 누구도 하지 못한다.

통제일이 되어도 하기 나름이란 이들이 제법 많다. 안희정 이 되면 티 좋고 사 되더라도 문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다. 잘 캐라. 그들의 뿌리는 공산당이다. 그들은 오로지 리 대한민국을 온통권한 색인지로 만들지는 커녕 통로로 사을도 올분 삼긴 태조로. 김중환과 박태준이 공동경관으로 시의 당을 지분 가질 태조로. 김중환이내서 대공계명을 죄다 취할만 자들이다. 노원 회 그 때로 노수정은 비법적 첩자가 노원이 더 노이겠고 율문을 태리는 자들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물라지 빼'다. 일제시대까지 독립군 들을 들지는 못할정경 되왔노 하지만도 마음으로는 할 되다가 벌였는데 훈공단의 정경관 안에 있는 500여명 20대까지 율부 자들은 오늘도 훈공단정경관을 호호리는 사정들이다.

대한민국이 비로소 잘 되가고 있지 않나 아직도 노는 리 >>

COVER STORY 13

2015년 4월 15일



19 > 뿐만 보면 물라지 라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음을 한때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하기 나름이란 것은 어찌의 체제로 세기처분 될 것인데 일갈일갈로 한때 제이 보다가 가가나 아니면 비로 가가나 그다음일 뿐이다. 먼저 죽은 무절이나 최가나 6.25 칸노 죽은 박정영이나 제기 타던가.

정권을 빼기엔 아성기들의 끝은 어찌되지 않을 것이다.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민생이 아니라 제 목숨을 제우하는 라되어 될 것이다. 아이라 그런 일추고 자 처신 불가마에 타야 하는데 타고 보니 불상아일 수가 있다. 앞으로 태우고 죽을의 곳만큼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지난 30년 단 한 초래도 그 공사에서 순해 본 적이 없다.

2015년은 실재했다27 아니다. 그 때 노태우 정부의 힘을 촉매면서 완대 김영삼의 당선을 이었다. 아라지은 김영삼은 최 음부리 우리민제까지 최치면서 현안상과 김정남을 앞세운

트럼프는 전하의 양로 안 이용으로 시간만 잃고 제너수해야 마라. 전쟁이 나면 해이군이 가장 먼저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트럼프라면 그의 해는가. 그래서 그의 싸우겠다는, 내전 같은 전사자전투에 연도 맺었다. 김정운은 우리민제까지 잘해줬었다. 주권이 온이 마치고 안이동행이 사라지면 달리는 순식간에 다 빼앗긴다. IMF를 뺄게 되었다. 그때 무슨 수로 돈을 벌었다.

그렇게 전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이 느닷없이 제너수했다가 되고 우왕들이 돌 돌린 자수의 나라가 되어 모두가 거저러 된다면 김정운은 굳이 사투를 꺼낼지 않다. 여자의 날조선에서 알이아 통진당이 될것이라고 그리고 대한 고정강선에서 아예 드러내놓고 공작을 할 때니 그들은 손에 피를 묻히며 백인들이 그사이에 날조해서 남은 국력을 세 글로써 빼앗았이 뺏아들 일 것이다. 그의 사퇴의 부름 들리며 국가유공자에 살아 있는 자유인 이면의 노예화하며 죄를 짓기 아예 불능한 남조선 반통들에게 철저의 행방과 파장을 거저러 할 것이다.

태극기가 있었단 걸때 마저 후보에서 밀린 지금, 태극기 세력은 그때는 세 갈래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주저않는 것이다. 대신 보아왔이 아니다. 화려한 월 10억 들어와 왔다. 둘은 레지스탕스다. 이래 캄보디 처럼 캄보디 폭을 일으키는 것이다. 셋은 그대도 비열연대로 선거 쳐보는 것이다. 이것은

물라지 보라. 1-2월 그 급작같은 때에 자유한국당이 무슨 짓을 했다. 그때 당 이름 바꾸려고 양광한 것 하지 않고 '고양태손석회계'로 특유를 많이 죽이려 빼달렸으면 현재 김정인들이 그 리 한백만 80 백억의 담합 까지 저 뺏겼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한국당 물론 무라웠든 마음이 풀말에 가졌었던 규정이 어쨌든 단행문헌의 엄할한 부자자들이 되었다. 그 인제적이었던 나를 지식인들은 무었을 했다. 그때들이 연세 태극기 문 손들었다. 내를 뺏겼고 지식인들이 많다. 티는 간첩자제 혼수 물 일이나니머도 틈을 만날 누구도 하지 못한다.

통제일이 되어도 하기 나름이란 이들이 제법 많다. 안희정 이 되면 티 좋고 사 되더라도 문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다. 잘 캐라. 그들의 뿌리는 공산당이다. 그들은 오로지 리 대한민국을 온통권한 색인지로 만들지는 커녕 통로로 사을도 올분 삼긴 태조로. 김중환과 박태준이 공동경관으로 시의 당을 지분 가질 태조로. 김중환이내서 대공계명을 죄다 취할만 자들이다. 노원 회 그 때로 노수정은 비법적 첩자가 노원이 더 노이겠고 율문을 태리는 자들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물라지 빼'다. 일제시대까지 독립군 들을 들지는 못할정경 되왔노 하지만도 마음으로는 할 되다가 벌였는데 훈공단의 정경관 안에 있는 500여명 20대까지 율부 자들은 오늘도 훈공단정경관을 호호리는 사정들이다.

대한민국이 비로소 잘 되가고 있지 않나 아직도 노는 리 >>

에서 5~10%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이들이 9급은 85.6%, 7급은 89.4%, 법원 서기보와 국회직 8급은 95%란다. 이러니 노랑진에서 10수를 한다 한들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공무원이나 ‘좋은 일자리’ 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게 다일까? 아니다. 그에 ‘촛불 유공자’가 또 붙을 것이다. 당신들은 뼈 빠지게 돈 벌어 세금 왕창 내고 당신 자식들은 실력 있어도 공무원이나 ‘좋은 일자리’ 가까이는 꿈도 못 꾸며 21세기 사대부 ‘운동권 귀족’들 밑에서 머슴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강요가 먹히지 않는 민간기업에 가면 되냐고? 그리 버틸 배짱 있는 사업가들이나 자산가들도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있을 때를 헤아려 둘째 선택처가 있다.

피할 길 없는 세 가지 선택

‘친노동자 정부’다. 알 만한 대선 주자들이 벌써부터 힘센 민노총에 가서 다 들러붙었는데 정권이 바뀌면 보나마나다. 노무현 때는 그래도 삼성이나 대기업 발언권이라도 있었고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 가면을 쓴 운동권들이 눈치라도 보는 시늉을 했지만 이제는 거침이 없다.

민노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맥의 저수지가 될 것이다. 그 친노동자 정부라 불리는 ‘민노총의 나라’에서 당신이라면 사업을 하겠는가. 돈 있고 머리 돌아가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다들 나라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리 되면 머리 좋지만 가진 게 없는 당신 자식은 어느 개천에 가서 용이 되겠는가.

그래도 약착같이 돈 벌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악몽의 선택처가 기다리고 있다. 제2 IMF가 온다. 트럼프는 ‘전략적 인내’란 이름으로 시간만 끌던 좌파 오바마가 아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인계철선이다. 그래서 사드를 갖다놓는 것

이다. 전쟁이 나면 왜 미군이 가장 먼저 죽어야 하는가. 당신이 트럼프라면 그리 하겠는가. 그래서 주한미군을 지키는 방어막이 사드다. 그들이 살아야 싸우든 말든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걸 치우겠다는. 내친 김에 전시작전통제권도 빼겠다는. 김정은과 우리민족끼리 잘해보겠다는. 주한미군이 떠나고 한미동맹이 사라지면 달리는 순식간에 다 빠져나간다. IMF를 벌써 잊었다. 그때 무슨 수로 돈을 벌겠나.

그렇게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이 느닷없이 베네수엘라가 되고 우방들이 등 돌린 자주의 나라가 되어 모두가 거지가 된다면 김정은은 굳이 서두를 까닭이 없다. 어차피 남조선에서 알아서 통진당이 되살아나고 그보다 더한 고정간첩들이 아예 드러내놓고 장사를 할 테니 그놈들 손에 피 묻히게 하면서 그 사이에 남조선에 남은 국부를 제 금고로 빼집없이 빨아들일 것이다. 그리 서서히 뜬을 들이며 지구마을에서 살아 있는 지옥인 야만의 노예사회에 적응하기 아예 불가능한 남조선 반동들에게 철저히 혁명화의 과정을 거치게 할 것이다.

태극기가 믿었던 김진태 마저 후보에서 밀린 지금, 태극기 세력은 그때는 세 갈래로 나뉘질 수 있다. 하나는 주저앉는 것이다. 대선 보이콧이 아니다. 하려면 3월 10일 했어야 했다. 들은 레지스탕스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다. 셋은 그래도 비문연대로 선거 치르는 것이다. 이것은 머리 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벼랑 끝으로 밀려가면서도 이 악물고 버텨던 나라사랑하는 마음의 흐름이다. 뛰어난 전략가가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그리 할 수 있다면 워싱턴에서 바로 모셔갈 것이다. 어느새 옛 여권이 되어버린 여의도 사람들과 함께 나름 지식인이라는 이들도 함께 애국태극기 물결에 탄핵 당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끝까지 해매는 이들에게

돌아켜보라. 1-2월 그 금쪽같은 때에 자유한국당이 무슨 짓을 했다. 그때 당 이름 바꾸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고영태-손석희 게이트’ 특위를 열어 죽어라 매달렸으면 현재 겁쟁이들이 그리 완벽한 8:0 ‘반역의 담합’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한국당 또한 두려웠든 마음이 콩밭에 가있었던 까닭이 어쨌든 탄핵반란의 엄청난 부역자들이 되었다. 그 언저리에 있었던 나름 지식인들은 무엇을 했다. 그대들이 언제 태극기를 흔들었나. 그대들 못잖게 지식인들이 많다. 더는 건방지게 훈수 둘 일이 아니며 또 들을 만큼 누구도 한가하지 않다.

문재인이 되어도 하기 나름이라는 이들이 제법 있다. 안희정이 되면 더 좋고 아니 되더라도 문희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다. 꿈 깨라. 그들의 뿌리는 공산당이다. 그들은 오늘처럼 대한민국을 운동권의 식민지로 만들기는 커녕 동교동 식솔로 울분 삼킬 때조차, 김종필과 박태준이 공동정권으로 시퍼렇게 지분 가질 때조차 집권하자마자 대공계열을 죄다 학살한 자들이다. 노무현 때 그 고삐를 늦추는 바람에 적화가 10년이 더 늦어졌다고 울분을 터뜨리는 자들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잃어버린 세대’다. 일제시대마저 독립군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되겠냐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잘 되기를 빌었는데 운동권의 영향권 안에 있는 50대부터 20대까지 철부지들은 오늘도 촛불명예혁명을 읊조리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이 비로소 잘 되어가고 있지 않냐 아직도 노란 리본만 보면 울컥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음을 한때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하기 나름이란 것은 어차피 적폐로 폐기처분 될 것인데 얼굴마담으로 한때 재미 보다가 가거나 아니면 바로 가거나 그 다름일 뿐이다. 먼저 죽은 무정이나 허

가이나 6.25 끝나고 죽은 박헌영이나 뭐가 다른가.

정권을 뺏기면 야심가들의 꿈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리셋이 아니라 제 목숨을 재촉하는 리셋이 될 것이다. 여기서 그만 멈추고 자신이 꽃가마에 타야 하는데 타고 보니 꽃상여일 수가 있다. 앞으로 대놓고 죽음의 굿판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모르겠는가. 그들은 지난 30년 단 한 차례도 그 장사에서 손해 본 적이 없다.

1991년은 실패했다고? 아니다. 그때 노태우 정부의 힘을 쭉 빼면서 끝내 김영삼의 당선을 이뤘다. 어리석은 김영삼은 처음부터 우리민족끼리 외치면서 한완상과 김정남을 앞세워 운동권의 발판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2002년 노무현의 당선과 2008년 이명박의 조기 무력화. 마침내 세월호-광화문 해방구·탄핵반란까지 이어진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은 이제 날마다 벌어질 터이다.

결국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는 길밖에 없다. 이 나라에서 가장 한심한 노숙자들조차 세금지원이 넘쳐서 부지런 떨지 않아도 조금만 애쓰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니 노숙자들조차 앞서 보여준 지옥으로 가는 묵시록에서 견뎌낼 재간이 없다. 어찌 하겠는가. 외통수다. 오늘이 을사늑약을 뒤집어쓴 1905년 11월 17일이라 여기고 이제부터 독립전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처음은 비밀 야전사령부다. 그 날이 오면, 오늘처럼 마음껏 애국태극기 집회 하고 돌아다니는 언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시나브로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나라를 통째 먹은 탄핵반란군들은 애국태극기 물결을 속속들이 꿰고 있다. 제대로 싸울 줄 알면서도 적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구국결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할 수 있다.

살고 싶은가? 곧장 독립전쟁에 나서라!

비록 탄핵반란군이 나라를 뒤엎었다 손치더라도 속았을망정 혁명을 꿈꾸던 젊은 날의 순수함은 빛바랜 추억이요 부패귀족이 되어 돈을 풀어도 잘 움직이지 않는 저들과 달리 애국태극기 물결은 애국전사들의 집합체다.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제 돈도 있으며 지난 녀 달 동안 야전훈련도 스스로 꽤나 거쳤다. 무엇보다 촛불반란군이 죽어도 따라올 수 없는 애국심이 있다.

다음으로 적과 아를 뚜렷이 해야 한다. 물 위로 드러난 부패귀족동맹이 언론노조-전교조-민노총을 비롯한 극우사대중북 부패운동권이라면 물 밑에서 움직이는 부패귀족동맹은 여의도-광화문-서초동으로 이어지는 부패기득권-귀족내각제개헌 세력이다. 그 날이 오면 그 역관계가 뒤집어질 것이다.

어느 때이든 그 머리를 때마다 정조준 탄핵하며 팔다리를 움직이는 신경망을 파고들어 끊어야 한다. 없는 살림에 아군은 복잡하다. 우군도 있고 용병도 있다. 우군은 앞에 모실 이들이며 용병은 거래 관계를 뚜렷하게 해야 한다.

셋째, 애국태극기 물결은 곧장 편제를 달리 하여 애국태극기 군대로 거듭 나아 한다. 그리고 애국태극기 군대는 속도로 이겨야 한다. 먼저 쟁점(Issue)을 걸어 싸움판을 만들고 곳곳에 파고들어 선전선동 해야 한다. 반역의 운동권이 아무리 빨리 대청소를 한다 하여도 반년은 걸린다. 그 반년 동안 반역운동권보다 앞질러 지난 녀 달 동안 한 만큼 하면 판을 뒤엎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당연한 말이지만 비밀 야전사령부 직할로 참모부를 24시간 돌려야 할 것이다. 조심해라. 아무리 뛰어나도 뒤통이가 아니 되는 이들은 반드시 사고를 친다.

싸움거리는 널려 있다. 먼저 말한 귀족유공자 모

듬(5.18-민주화-촛불)부터 비롯해 젊은이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야 한다. 벤처 사기와 저축은행과 바다이야기로 서민들의 분노를 솟구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새빨간 거짓말인 김대중-노무현 신화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 그 위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다시 써야 한다. 탄핵반란군들이 종북보다 더한 ‘우리 자식들의 등골을 빼먹는 부패귀족들’임을,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기꾼 반역운동권들’임을 밝혀 마침내 박 대통령의 순교를 넘어 30년 국공합작 시대의 어둠을 넘어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하늘을 열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 말한 전쟁을 누가 앞장서 벌일 것인가. 답은 하나다. 젊은이들이다. 앞으로 애국태극기 물결에서 나오는 모든 돈의 반은 애국 젊은이들을 키움에 써라. 가슴에 새겨야 한다. 오늘 애국태극기 물결은 대한문의 국민저항본부도 있지만 청계천의 재야우파도 있다.

1987년 6월 10일 그때 늙은 운동권들 다 모아봤자 오늘 청계천만큼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이 반역의 판을 만든 것은 엄청난 학생운동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애국태극기 물결이여. 그 늙은 운동권들처럼 살아남고 싶은가.

다시 말한다. 옛날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를 논 팔고 소 팔아 키우신 것처럼 젊은이들을, 재야우파의 젊은 전사들을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아낌없이 아니 빛을 내어서라도 모든 것을 갖다 바쳐 키워라. 오로지 그 길만이 지옥으로 가는 묵시록을 막고 아마겟돈을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외나무 길이다.

5·9 대선은 체제수호 vs 반체제 전쟁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자유민주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간의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우파는 양강구도를 만들 수 있는 보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앞으로 1주일이 중요합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양강구도를 이뤄야 합니다.

5월 9일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로,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로,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로,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가 각각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1주일이 관건입니다.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앞서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0% 내외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0% 후반에서 20% 초반을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간의 경쟁입니다. 누가 2위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위를 하는 후보를 중심으로 부동산이 급격히 쏠릴 것입니다. 만일 자유민주진영이 지지하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강구도를 이룬다면 자유민주진영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강에서 멀어진다면 역으로 반문연대 단일화에 몰릴 것입니다. 자유민주진영은 누가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자유민주진영은 나누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

26 정치 2017년 4월 14일 미래한국

본문



5·9 대선은 체제수호 vs 반체제 전쟁

자유민주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간의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우파는 양강구도를 만들 수 있는 보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앞으로 1주일이 중요합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양강구도를 이뤄야 합니다.

5월 9일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앞서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0% 내외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0% 후반에서 20% 초반을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간의 경쟁입니다. 누가 2위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위를 하는 후보를 중심으로 부동산이 급격히 쏠릴 것입니다.

만일 자유민주진영이 지지하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양강구도를 이룬다면 자유민주진영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강에서 멀어진다면 역으로 반문연대 단일화에 몰릴

미래한국 2017년 4월 14일 정치 27

본문

어렵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은 누가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자유민주진영은 나누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 등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진영에서 떨어져 나간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유 보수 우파의 세력은 한곳으로 집결해야

한 곳으로 지지자를 결집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앞선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진영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진영이 누가 우리 후보 인지를 정한다면 자유민주진영을 차등보는 많은 보수를 유권자들에게 신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약속을 지키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무소속, 새누리당 가운데 누가 가장 앞선 후보인가 확연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후보를 단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가 몇 가지 면에서 자유를 지지한다면 그 자유민주진영이 먼저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나누는 이데아 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은 누구는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에 있어서 후보 풀림에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후보 풀림에 분주하는 사이 시간을 놓칩니다.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은 아무런 기준도 가지지 못한 채 무작정 반문연대로 몰려갈 것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진영의 최악 사례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한 후보도 힘을 결집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강을 형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1주일 내에 이것을

이러한 면에서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이 가능하지 않다면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킬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진영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단일 보수 유권자를 결집해 실현한다면 이번 선거는 패배입니다.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일의 관건은 우리 후보를 정하고 우리 후보를 앞둔 것으로 자체 선거를 일대일 구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5·9 대선은 체제전쟁이다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진영의 흥망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상대는 선거라는 합법공단을 활용해 변명의 자유대한민국을 다룬 체제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감입니다. 북한은 공산정체주의자들 과 그 무척여는 자들은 선거를 활용해 자유대한민국을 다룬 체제로 전환하려는 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둘러싼 투쟁입니다. 선거라는 보수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체제를 둘러싼 투쟁입니다. 전체주의자들이 어떤 선거를 활용해 체제를 바꾸려 한다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촛불시위를 주동한 박근혜정권은 비상국면법안 등 3월 11일 2017 촛불시위와 7월 30일 촛불시위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선거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정초고 있는 대통령직을 부정합니다. 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직을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수단이 행동이다 라고 선언한

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언문에 시 대통령직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초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시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헌법이 말하는 대통령직이 허물어진 데에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의제는 생동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군주에서 민주제로 넘어오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군주제 하에서는 군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주권권 권 리, 자유가 없는 신민 즉 백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민주공화제 하에서 개인은 자유와 권리의 주체이자 생동한 존재인들입니다. 법 이외 어떤 존재도 자유로운 개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수반에 달합니다. 단일 이 둘이 자유 수반을 행사하고 있다면 공화국은 수반의 권력의 각자 권한행사 로 각각으로 대립할 것입니다.

평등한 개인들에 의한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고, 공화국의 의사를 결정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사상적 고뇌가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데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대의제는 우선 개인들의 생각이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개인들의 생각이 모여서 국정을 운영합니다. 복수의 생각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각자의 입장을 내세워 개인들의 다양한 생각을 복수의 정의로 모읍니다. 그리고 복수의 정장은 자신의 입장이 다수가 되기 위해 서로 경쟁하

제1부 안희회 구성 및 운영

제2부 심의·이력 현황

제3부 종합평가

제4부 심의·이력 사례

부록

등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진영에서 떨어져 나간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유 보수 우파 세력은 한 곳으로 집결해야

한 곳으로 지지세를 결집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앞선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진영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진영이 누가 우리 후보인지를 정한다면 자유민주진영을 쳐다보는 많은 보수층 유권자들에게 신호가 될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마음에 들고 안들고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무소속, 새누리당 가운데 누가 가장 앞선 후보인가 확연히 구별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보로 단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가 몇 가지 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유민주진영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는 이래서 부족하고, 누구는 저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책상에 앉아서 후보 품평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후보 품평에 몰두하는 사이 시간을 흘려갑니다. 그리고 보수층 유권자들은 아무런 기준도 가지지 못한 채 무작정 반문연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진영의 최악 시나리오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한 후보로 힘을 결집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강을 형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1주일 내에 이것을 이뤄낸다면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이 가능합니다.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진영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수 유권자 결집에 실패한다면 이번 선거는 패배입니다.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일의 관건은 우리 후보를 정하고 우리 후보

11) 다. 복수의 정당이 대표자를 내세워 경쟁합니다. 주권자들은 복수의 정당이 내세운 대표들의 입장과 정책을 모두 투표로 자신의 주권을 대신 행사할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 이들이 개인들의 자질을 모르면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지는 자신들의 입장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소중히 지켜질 것입니다. 이것이 대의제와 복수정당의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의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그에서 나온 선출된 대표들은 국민은 가짜 이름이 없습니다. 원리/기초가 분명해 이르기 못하도록 원리/기초를 삼선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권력기관이 전체와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삼선의 분리와 삼선의 견제와 균형을, 그리고 주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뽑힌 대표자에 의해 행사하는 권한과 자라는 자격은 있습니다. 개인에게 개혁 목적의 제한 등 동 변화/혁신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제정의 사후유동성을 사후로 행사하도록 하고 주장합니다. 개별 총수의 개인 자신을 배웠고, 대의정당의 활동을 위해 사내에 참여하는 사후유동성을 배웠습니다. 노조총조합의 활동을 위해 노조총조합의 가입유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노조총조합의 극한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활동을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활동을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점 본연에서 지적 >언론총합력 자유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 후보들의 제도적 제약이

비상행동은 30대 초반 100대 개개 별 발표했습니다. 100대 개개 >제정해서 개 >공인총합력/구경력 >총합력/제정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 >외국인보장책 >외국총합력 자유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자유민주진영은 후보로 힘을 결집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강을 형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1주일 이것을 이뤄낸다면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이 가능합니다.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진영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수 유권자 결집에 실패한다면 이번 선거는 패배입니다.

그 때부터 남북을 보십시오. 물론 동시 국가개혁 목적에서 국경폐쇄의 수사권을 받도록 및 인권과 국경폐쇄에 대한 회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 상 국경폐쇄의 국경안보를 지키기 위한 일 부인 대책, 대응방안을 중시시켜왔다는 것입니다. 개별에게 개혁 목적의 제한 등 동 변화/혁신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제정의 사후유동성을 사후로 행사하도록 하고 주장합니다. 개별 총수의 개인 자신을 배웠고, 대의정당의 활동을 위해 사내에 참여하는 사후유동성을 배웠습니다. 노조총조합의 활동을 위해 노조총조합의 가입유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노조총조합의 극한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활동을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활동을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점 본연에서 지적 >언론총합력 자유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육 살간한 등재는 남북관계 및 외교 안전성제입니다. 비상행동은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을 아무 조건없이 재개하려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금강산을 관광하던 박왕자 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치열을 고사하고 한 미더 시라도 아직 없습니다. 북한은 인명도 포로를 가져 우리 국군과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조선훈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선민합에 있던 국군공수사들이 북한 회생을 강요했습니다. 아직 북한은 조국대 어떤 시라도 제정한다 약속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 조선훈 북한 이상으로 대한민국과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조선훈 없이 북한을 지원하려고 비상행동은 주장합니다. 비상행동은 시대 제약을 철폐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추진, 조세 제정, 미군에 대한 국외의 중립, 동맹국과의 동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대 제약을 철폐하는 것은 북한이 해야 신장하는 단골 제정입니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수권인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 평화협정이 체결한다면 그날부터 제정은 주권에게 헌법에 있어야 하는 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불평등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평화로 주장하지만 그 본질은 주권인 권력 총수와 한미불평등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한미가 협력해 평화협정을 체결하

후 미국이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알아 지 나지 않아 협력의 공적으로 명량했습니다. 그의 같은 수상을 북한과 그 동조자들은 그리고 죽였습니다. 물론 한미가 협력해 대한민국의 국력을 다룹니다. 그러나 내부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시책이 존재한다면 대한민국은 내부로부터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비상행동은 언론자유방어법 제정 하라고 합니다. 많은 언론자유방어법이 주권인들이 철수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 일 위험에 공복해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나서야 평화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 리가 이쪽만 평행은 그 기초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제정을 철폐하고, 남북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방송의 편 송은 언론노조와 동수로 구성하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방송은 언론노조의 손에 의해 통제 됩니다. 우리는 최근 최순실 사태에서 언론이 권력 의된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를 두 눈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언론이 언론노조의 손에 의해 장악되어 한국노조 전체의 의향은 방송을 독점할 것입니다.

헌법개정 취지, 노동자 권리를 만들려는 비상행동

비상행동은 국가보안법과 대의정당을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공안정비수사권 그 부속제도를 대체한 외국국제를 지키는 법이며, 대의정당은 대의주주자들의 극한적인 대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비상행동은 이들을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비상행동은 대한민국의 체제는 민주주의는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노동의 불평등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평화로 주장하지만 그 본질은 주권인 권력 총수와 한미불평등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한미가 협력해 평화협정을 체결하

는 시기로 참수되어 기업결핵은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동시 추락,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순간에 몰수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상행동에 걸리는 제 장입니다. 제 장까지 비상행동의 주장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진영은 자유한국당 후보와 양강을 형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1주일 내에 이것을 이뤄낸다면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이 가능합니다.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진영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수 유권자 결집에 실패한다면 이번 선거는 패배입니다.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일의 관건은 우리 후보를 정하고 우리 후보

헌법개정 취지, 노동자 권리를 만들려는 비상행동

비상행동은 국가보안법과 대의정당을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공안정비수사권 그 부속제도를 대체한 외국국제를 지키는 법이며, 대의정당은 대의주주자들의 극한적인 대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비상행동은 이들을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비상행동은 대한민국의 체제는 민주주의는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노동의 불평등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평화로 주장하지만 그 본질은 주권인 권력 총수와 한미불평등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한미가 협력해 평화협정을 체결하

비상행동은 국가보안법과 대의정당을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공안정비수사권 그 부속제도를 대체한 외국국제를 지키는 법이며, 대의정당은 대의주주자들의 극한적인 대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비상행동은 이들을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비상행동은 대한민국의 체제는 민주주의는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노동의 불평등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평화로 주장하지만 그 본질은 주권인 권력 총수와 한미불평등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한미가 협력해 평화협정을 체결하

비상행동은 국가보안법과 대의정당을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공안정비수사권 그 부속제도를 대체한 외국국제를 지키는 법이며, 대의정당은 대의주주자들의 극한적인 대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비상행동은 이들을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비상행동은 대한민국의 체제는 민주주의는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노동의 불평등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평화로 주장하지만 그 본질은 주권인 권력 총수와 한미불평등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한미가 협력해 평화협정을 체결하

비상행동은 국가보안법과 대의정당을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공안정비수사권 그 부속제도를 대체한 외국국제를 지키는 법이며, 대의정당은 대의주주자들의 극한적인 대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비상행동은 이들을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비상행동은 대한민국의 체제는 민주주의는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노동의 불평등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평화로 주장하지만 그 본질은 주권인 권력 총수와 한미불평등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한미가 협력해 평화협정을 체결하

비상행동은 국가보안법과 대의정당을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공안정비수사권 그 부속제도를 대체한 외국국제를 지키는 법이며, 대의정당은 대의주주자들의 극한적인 대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비상행동은 이들을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비상행동은 대한민국의 체제는 민주주의는 폐지하고 주장합니다. 노동의 불평등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평화로 주장하지만 그 본질은 주권인 권력 총수와 한미불평등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한미가 협력해 평화협정을 체결하



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선거를 일대일 구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5·9 대선은 체제전쟁이다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진영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상대는 선거라는 합법공간을 활용해 번영의 자유대한민국을 다른 체제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북한의 공산전체주의자들과 그에 부역하는 자들은 선거를 활용해 자유대한민국을 다른 체제로 전환하려는 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둘러싼 투쟁입니다. 선거라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체제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전체주의자들이 이번 선거를 활용해 체제를 바꾸려 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지난 수개월간 촛불시위를 주동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3월 11일 ‘2017 촛불권리선언’과 ‘100대 촛불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선언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의정치를 부정합니다. ‘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 행동이다’라고 선언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언문에서 대의정치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시키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헌법이 말하는 대의정치가 허물어진 데에 위기의 본질이 있습니다.

대의제는 평등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넘어오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군주

제 하에서는 군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주권과 권리, 자유가 없는 신민 즉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민주공화제 하에서 개인은 자유와 권리의 주체이자 평등한 존재입니다. 법 이외 어떤 존재도 자유로운 개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수천만에 달합니다. 만일 이들이 각자 주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공화국은 수천만 주권자들의 각자 주권행사로 극단적으로 대립할 것입니다.

평등한 개인들에 의한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고, 공화국의 의사를 결집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사상적 고려가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와 복수 정당제입니다.

대의제는 우선 개인들의 생각의 다양함을 전제합니다. 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개인들의 생각을 모으는 과정을 만듭니다. 복수의 정당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각자의 입장을 내세워 개인들의 다양한 생각을 복수의 정당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복수의 정당은 자신들의 입장이 다수가 되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복수의 정당이 대표자를 내세워 경쟁합니다. 주권자들은 복수의 정당이 내세운 대표들의 입장과 정책을 보고 투표로 자신의 주권을 대신 행사할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 이들이 개인들의 지지를 모으려면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한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소중히 지켜질 것입니다 이것이 대의제와 복수정당제의 참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의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깊은 고려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국민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권력기관이 폭정에 이르지 못하도록 권력기관을 삼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삼권의 분립과 삼권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주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뽑힌 대표자에 의해 행사되는 제

한된 권력 등으로 개인들의 소중한 권리와 자유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비상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마련된 대의정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의정치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결국 전체주의로 가 기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 후보들의 체제도전 막아야

비상행동은 ‘10대 분야 10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0대 과제 중 ▷재벌체제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좋은일자리·노동기본권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개혁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항목을 보겠습니다. 공안통치기구개혁 항목에서 국정원의 수사권을 분리 및 이관하고 국정원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업무인 대북, 대공업무를 중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체제 개혁 항목에 재벌 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을 제정하고,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사회로 환수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재벌 총수의 개인 재산을 빼앗고, 대기업들이 미래투자를 위해 사내에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을 빼앗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국내에 남아 있을 대기업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노동조합의 극한적인 파업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환경을 최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외국투자가 중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투자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정책입니다. 비상행동은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을 아무

조건없이 재개하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금강산을 관광하던 박왕자 씨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한마디 사과도 아직 없습니다. 북한은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우리 국군과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천안함에 있던 국군용사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직 북한으로부터 어떤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북한을 지원하라고 비상행동은 주장합니다.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비상행동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통제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것은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해마다 선전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날부터 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하지만 그 본질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월남이 월맹과 평화협정을 체결한후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월맹의 공격으로 멸망했습니다. 그와 같은 수순을 북한과 그 동조자들은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월남과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부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대한민국은 내부로부터 허물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비상행동은 언론장악방지 4법을 제정하라고 합니다. 말은 언론장악방지법이지 속사정은 저들이 장악한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자는 것입니다. 방송의 편성권을 언론노조와 동수로 구성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방송은 언론노조의 손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 최순실 사태에서 언론이 편향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 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모든 언론이 언론노조의 손 아래 장악되어 한목소리로 전체주의화하는 광경을 목도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해체, 노동자 정권을 만들려는 '비상행동'

비상행동은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자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공산전체주의와 그 부역자들로부터 대한민국체제를 지키는 법이며, 테러방지법은 테러주의자들의 극단적인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법입니다. 비상행동은 이들을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비상행동은 대한민국체제는 안중에 없는 듯합니다. 공산전체주의자들이 마음 놓고 활개치고, 테러분자들이 마음껏 활개치고 활동하는 세상 이것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인 것입니다.

비상행동의 주장은 한미동맹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으로 위협하건 말건 무조건 대화를 재개하고 지원을 재개하라는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굴복해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노예의 평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번영은 그 기초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벌을 해외로 내쫓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는 나라에 기업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기업을 자국에 유치하려고 전력을 기울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력 있는 대기업이 해외에 이주한다면 해당 국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비상행동의 주장대로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금지한다면 기업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노조가 아무리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해도 이들의 파업을 막을 수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노조 파업의 천국에 기업을 하겠다는 무모한 기업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하겠다는 무모한 투자자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비상행동의 주장을 해석하면 한미동맹은 폐지되어 안보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신인도는 최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은 막을 방법이 없고, 기업의 재산은 사회로 환수되어 기업환경은 최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투자는 없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동시 추락,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비상행동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비상행동의 주장은 주장에 머물지 않았 습니다. 비상행동의 주장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비상행동의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상행동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로 최우 선순위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번 대선을 두고 벌여 지는 체제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동될 것입니다. 패배주의는 금물입니다. 자유민주진영이 하나로 뭉친다면 보수 유권자들이 그 뒤를 따를 것

입니다 우리가 패배주의에 휩싸여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를 쳐다보는 유권자들도 혼돈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권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 진영은 자유한국당 후보와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야 합니다.

| | |
|--------|--|
| 의결번호 | 2017대선-자심8 |
| 언론사 |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 (주간한국) 서울 중구 삼일대로 308 조양빌딩 본관 10층 대표이사 조상현 |
| 심의대상기사 | 주간한국 2017년 4월 24일자 14면 「文 사주, 安에 우월... 安 음택 훼손 변수」 제하의 칼럼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객관적 근거 없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역술인의 칼럼을 게재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도 내용

[박민찬 대선풍수과학원장 칼럼] 19대 대통령 문재인 가장 유력

文 사주, 安에 우월... 安 음택 훼손 변수

19대 대통령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의 여러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돼 있다. 그동안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변동치고 그에 따라 후보와 당, 지지자들이 일희일비했지만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운명이 정해진다. 사주(四柱)는 운명이요, 운명은 미래이며 현실이다.

대선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은 운명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확실시된다. 이는 각 대선주자를 풍수로 풀고 사주를 본 결과에 따른 것이다.

타고난 운명(사주팔자)으로 80%의 미래가 결정된다. 따라서 누구나 결정된 운명으로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데, 운명은 직계조상 음택(묘지)에서 발원되며, 그 음택의 기(氣)가 직계 자손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운명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명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박민찬 도선풍수과학원장 칼럼

19대 대통령 문재인 가장 유력

文 사주, 安에 우월... 安 음택 훼손 변수

19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각 당의 여러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나섰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돼 있다. 그동안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변동치고 그대이라 후보와 당, 지지자들이 일희일비하지만 '운명'은 가스를 수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운명이 정해진다. 사주(四柱)란 운명이고, 운명은 미래이며 현실이다.

대선을 결투부터 말하지만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은 운명적으로 문재인이 가장 유력하다. 이는 각 대선주자를 풍수로 풀고 사주를 본 결과에 따른 것이다.

타고난 운명(사주팔자)으로 80%의 미래가 결정된다. 따라서 누구나 결정된 운명으로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데, 운명은 작게조상 음택(묘지)에서 비롯되며, 그 음택의 기(氣)가 작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운명은 대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명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첫째로 조상 3대 음택 김·홍·여부 감편, 둘째로 타고난 사주팔자(년월일시) 감편, 셋째로 배우자 사주팔자 감편, 넷째로 살고 있는 양택 김·홍·여부 감편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권 주자들의 운명을 비교하면 누가 대권에 성공할 것인지를 100% 알 수 있다.

이번 19대 대권주자 5인중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운명적 어려움과 현실을 감안하여 논외로 하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만을 비교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두 후보도 일부 조상음택과 사주(운명)만을 비교 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安 증조부묘 명당 중 명당, 조부묘 화장했다면 '큰 변' ... 文 부친묘 평범

먼저 2012년도에 같은 날 두 후보의 조상음택으로 본 대권운이다.

문재인의 조부와 그 윗대 조상은 아복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강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부친 묘지만 보게 되었다. 무사 천후로 공원묘지에 있는 부친묘지는 자신에게 무해무득이다. 청룡백호가 형성되어 자신들의 화목을 이루었고 현무가 원만하여 손질하는 일에 진행은 되지만 조산(현무 위이 훼손되어 구슬이 맑게 된다. 주작 형상이 약하게 있지만 재물이 넉넉하게 된다.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귀성은 없다. 사주에도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필자는 아니다. 그러나 2017년에 대권을 쥘 수



있는 관운이 강하게 들어왔기에 기회가 된 것이다. 이는 문 후보의 운명(사주)가 증조부 음택 덕으로 보인다.

안철수의 증조부 묘지도 부산에 있었다. 야산이었다. 작적 놀랄 만큼 명당이다. 안철수의 운명이 증조부 명당 영향이라는 것을 거울을 보듯 알 수 있었다. 청룡백호는 물론 주위의 기가 모여져 화목을 이루었고, 주작(묘지 앞 산봉우리, 재물형상)이 묘지와 적당한 거리에 형성되어 있었고, 무덤보다 귀한 지손(인물)이 배출되는 귀성이 완벽하게 있다. 대개 조부보다 증조부의 음택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치를 감안하면 안철수도 증조부의 영향이다. 그리고 증조부 묘지의 형상과 안철수의 운명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한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조부묘지를 파묘하여 화장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큰 일을 하는 자손에게 치명적이 된다. 더구나 대권성공은 어렵게 된다. 누구나 생존하는 부모는 자손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고 운명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장했던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는 것은 자손에게 흉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실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10년에 명당에 묘신 조부묘를 파서 화장한 후 서술시장에서 내려왔고 그 후 재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이회창 전 총재도 2010년에 부모 묘를 파서 화장하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선진당 대표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그 후 정치에서 멀어졌다.

사주, 文 4월 이후 대권운... 安, 문제인보다 약하고 3월 이전 '운'

다음은 두 후보의 사주팔자(운명)를 비교해 보았다.

문후보는 1952년 음력 12월 10일 술사생이다(정확한 사주라고 판단함).

문후보는 64세부터 을, 경 함으로 담이 되었는데 그는 문후보에게 관운이다. 또한 64세부터 대운(70%)이 68세까지 5년 간 강하게 들어왔다. 현재 66세인데

2017년 정유년에도 사, 유, 축이 되어 함이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대운과 년운, 달운에 관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또한 4대운이므로 73세까지 관운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어 우여곡절 끝에 임기는 마치게 되지만 사주팔자에 골치 아픈 사건이 많은 필자가 다. 그하여 불안정한 현실의 대한민국은 국가발전에 지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자기 주장이 약한 사주이므로 아래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어진다. 아래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힘들어지게 된다.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된다. 재물에도 손실이 온다. 재물이 있어 돈은 있는데 나가는 편이다. 두뇌가 좋으나 안철수만 못하다.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 나쁜진 않다. 그러나 현실을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사주가 용해에 돼지날 태어났다. 진·해는 원진이 끼어 운명적으로 평생 구실이 많은 사주다.

결론적으로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가 혼란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이유는 천체천 개복으로 인해 국운이 상실되었고 청와대 타거 국가발전에 지장이 많은 흉타거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후보가 당선되면 청와대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국정을 수행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가발전과 대통령 본인으로 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국운이 80% 영향이고 대통령력 20%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1962년 음력 1월 22일 진사생이다. 이 사주는 정치보다 학자, 연구하는 필자다. 특히 집요하게 하는 연구를 잘 한다. 고집이 세고 여러 사람과 음함을 잘 못한다. 따라서 정치가로는 맞지 않다. 어려서부터 55세까지는 따뜻한 운이 좋아서 승승장구한다. 2017년 56세에 관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대권후보는 되지만 조 부묘 화장으로 인한 흉이 작용하고 문 후보가 음력 4월에 관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이다. 2017년은 해운에서 호랑이 띠에 호랑이 띠에 태어났으므로 해운과 달운이 원진이 되어 짜증나는 일이 많은 해가 된다. 사주에 재물이 좋다. 따라서 부자가 된다. 돈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 또 문 후보보다 두뇌가 더 좋고 골은 사생이다.

안 후보가 아쉬운 것은 음력 3월에 관운이 문 후보보다 더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3월에 선거가 있었다면 대권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문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후보보다 대권운이 강했으므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지난 2012년 대권에 나섰을 때도 본 풍수가는 안철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대권운이 더 좋았기 때문에 안철수가 대권을 잡는다고 밝힌 바 있는 데, 그때 문 후보에게 양보하지 않고 밀고 나갔으면 대권에 성공했을 것이다. 지금은 대권운이 문 후보와 반대가 된 것이다.

다만, 두 후보의 4가지 운명중 배우자 대가와 양택 김·홍을 비교하였었는데, 이 두가지 김·홍 여부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끝으로 도선풍수 제34대 전수로서 국가가 안정될 수 있고 국운이 융성할 수 있는 결정적 방법을 제안한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국정을 수행한다면 말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잘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흙, 땅, 성, 쇠의 근원은 천체천 개복여부와 청와대 타거의 영향이다. 이 두 곳을 피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 잘 될 수 없다.

그런데 천운신조로 그 방안이 연구가 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양택 명당이 서울 근교에 있다. 이곳은 당선되면 바로 임주가 가능하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감안한 것이다.

그 양택 명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음을 본다면 천체천의 대복과 청와대의 흉타거를 피할 수 있으므로 나라가 곧 안정되고 국운이 융성하게 된다. 국가와 국민이 모든 면으로 기대 이상의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위대한 자연을 활용할 수 있다.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 질 수 있다는 것이 풍수연구의 결론이다.

● 박민찬 도선풍수과학원장 프로필

박민찬 도선풍수과학원장은 도선대사(사신) 및 고승(고승)부터 비전대 풍수 '신개체형상(神開體形相)'의 전수자(34대 후계자)로 풍수사신(신개) 불행학 연구소 및 한국불행연구소를 열고 풍수학을 가르쳤으며, 동명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풍수학 교수로 역임했다. 2009년 한국 현대명상33회에 선정됐으며, 현재 도선풍수과학원 원장으로 있다. 1997년 대선(이회창 후보 별거), 2002년 대선(노무현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했으며, 삼성·현대 등 재벌(기업) 총수의 운명운 사면에 중앙 일간지 및 시사주간지 등을 통해 적중시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저서로 <천년만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가 있다.

첫째로 조상 3대 음택 길·흥 여부 감평, 둘째로 타고난 사주팔자(년월일시) 감정, 셋째로 배우자 사주팔자 감정, 넷째로 살고 있는 양택 길·흥 여부 감평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권주자들의 운명을 비교하면 누가 대권에 성공할 것인지 100% 알 수 있다.

이번 19대 대권주자 5인중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운명적 어려움과 현실을 감안하여 논외로 하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만을 비교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두 후보도 일부 조상음덕과 사주(운명)만을 비교 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安 증조부묘 명당 중 명당, 조부모 화장했다면 '큰 변'...文 부친묘 평범

먼저 2012년도에 같은 날 두 후보의 조상음덕으로 본 대권운이다.

문재인의 조부와 그 윗대 조상은 이북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감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부친 묘지만 보게 되었다. 부산 천주교 공원묘지에 있는 부친 묘지는 자손에게 무해무득이다. 청룡백호가 형성되어 자손들의 화목을 이루었고, 현무가 원만하여 추진하는 일에 진행은 되지만 조산(현무위)이 훼손되어 구설이 많게 된다. 주작 형상이 약하게 있지만 재물도 넉넉하게 된다. 귀한 인물이 될수 있는 귀성은 없다. 사주에도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팔자는 아니다. 그러나 2017년에 대권을 쥌 수 있는 관운이 강하게 들어왔기에 기회가 된 것이다. 이는 문 후보의 운명(사주)가 증조부 음택 덕으로 보인다.

안철수의 증조부 묘지도 부산에 있었다. 야산이었다. 깜짝 놀랄 만큼 명당이다. 안철수의 운명이 증조부 명당 영향이라는 것을 거울을 보듯 알 수 있었다. 청룡백호는 물론 주위의 기가 모여져 화목을

이루었고, 주작(묘지앞 산봉우리, 재물형상)이 묘지와 적당한 거리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귀한 자손(인물)이 배출되는 귀성이 완벽하게 있다. 대개 조부보다 증조부의 음덕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치를 감안하면 안철수도 증조부의 영향이다. 그리고 증조부 묘지의 형상과 안철수의 운명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현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조부묘지를 파묘하여 화장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을 하는 자손에게 치명적이 된다. 더구나 대권성공은 어렵게 된다.

누구나 생존하는 부모는 자손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고 운명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매장했던 조상묘를 파서 화장하는 것은 자손에게 흉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실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2010년에 명당에 모신 조부묘를 파서 화장한 후 서울시장직에서 내려왔고 그 후 재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이회창 전 총재도 2010년에 부모 묘를 파서 화장하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선진당 대표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그후 정치에서 멀어졌다.

사주, 文 4월 이후 대권운... 安, 문재인보다 약하고 3월 이전 '운'

다음은 두 후보의 사주팔자(운명)을 비교해 보았다.

문후보는 1952년 음력 12월 10일 술시생이다(정확한 사주라고 판단함).

문후보는 64세부터 을, 경 합으로 금이 되었는데 금은 문 후보에게 관운이다. 또한 64세부터 대운(70%)이 68세까지 5년간 강하게 들어왔다. 현재 66세인데 2017년 정유년에도 사, 유, 축이 되어 함이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대운과 년운, 달운에 관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또한 4대운이므로 73세까지 관운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어 우여곡절 끝에 임기는 마치게 되지만 사주팔자에 골치 아픈 사건이 많은 팔자이다. 그리하여 집권 후 불안정한 현실의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 지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자기 주장이 약한 사주이므로 아래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어진다. 아래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힘들어지게 된다.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된다. 재물에도 손실이 온다. 재물운이 있어 돈은 있는데 나가는 편이다. 두뇌가 좋으나 안철수만 못하다.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 나쁜진 않다. 그러나 현실을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사주가 용해에 돼지날 태어났다. 진·해는 원진이 끼어 운명적으로 구설이 많은 사주다.

결론적으로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가 혼란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이유는 청계천 개복으로 인해 국운이 상실되었고 청와대 터가 국가발전에 지장이 많은 흉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후보가 당선되면 청와대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국가발전과 대통령 본인으로 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국운이 80% 영향이고 대통령이 20%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1962년 음력 1월 22일 진시생이다. 이 사주는 정치보다 학자, 연구하는 팔자다. 특히 집요하게 하는 연구를 잘 한다. 고집이 세고 여러 사람과 융합을 잘 못한다. 따라서 정치가로는 맞지 않다. 어려서부터 55세까지는 따뜻한 운이 좋아서 승승장구한다. 2017년 56세에 관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대권후보는 되지만 조 부묘 화장으로 인한 흉이 작용하고 문 후보가 음력 4월에 관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이다. 2017년은 해운에서 호랑이 띠에 호랑이 달에 태어났으므로 해운과 달운이 원진이 되어 짜증나는 일이 많은 해가 된다. 사주에 재물운이 좋다. 따라서 부자가 된다. 돈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 또 문 후보보다 두뇌가 더 좋고 올곧은 사람이다.

안 후보가 아쉬운 것은 음력 3월에 관운이 문 후보보다 더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3월에 선거가 있었다면 대권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문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후보보다 대권운이 강했으므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지난 2012년 대권에 나섰을 때도 본 풍수가는 안철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대권운이 더 좋았기 때문에 안철수가 대권을 잡는 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때 문 후보에게 양보하지 않고 밀고 나갔으면 대권에 성공했을 것이다. 지금은 대권운이 문 후보와 반대가 된 것이다. 다만, 두 후보의 4가지 운명중 배우자 운명과 양택 길·흉을 비교하지 않았는데, 이 두가지 길·흉 여부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끝으로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로서 국가가 안정될 수 있고 국운이 융성할 수 있는 결정적 방법을 제안한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국정을 수행한다고 한 말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잘 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흥, 망, 성, 쇠의 근원은 청계천 복개 여부와 청와대 터의 영향이다. 이 두 곳을 피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 잘 될 수 없다.

그런데 천우신조로 그 방안이 연구가 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양택 명당이 서울 근교에 있다. 이곳은 당선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감안한 것이다.

그 양택 명당에서 대통령이 나랏일을 본다면 청계천의 대홍과 청와대의 흥터를 피할 수 있으므로 나라가 곧 안정되고 국운이 융성하게 된다. 국가와 국민이 모든 면으로 기대 이상의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위대한 자연을 활용할 수는 있다.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 질 수 있다는 것이 풍수연구의 결론이다.

■ 박민찬 도선풍수과학원장 프로필

박민찬 도선풍수과학원장은 도선대사(신라말 고승)

로부터 비전돼 온 풍수 '신안계물형설(神眼系物形說)'의 전수자(34대 후계자)로 풍수지리 신안계 물형학 연구소 및 한국발전연구소를 열고 풍수학을 가르쳤으며, 동방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풍수학 교수를 역임했다. 2009년 한국 현대인물33인에 선정됐으며, 현재 도선풍수과학원 원장으로 있다. 1997년 대선(이회창 후보 불가), 2002년 대선(노무현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했으며, 삼성·현대 등 재벌(기업과 총수)의 운명을 사전에 중앙 일간지 및 시사주간지 등을 통해 적중시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저서로 <천년만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가 있다.

2. 주의

| | |
|--------|--|
| 의결번호 | 2017대선-자심1 |
| 언론사 | 주식회사 대구일보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0 대구일보빌딩 6층 대표이사 이후혁 |
| 심의대상기사 | 대구일보 2017년 3월 21일자 26면 「불신과 걱정만 앞서는 대선 D-50」 제하의 사설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뉴스통신사의 사설을 전재하면서, 특정 출마 예정자에 대한 비판 부분을 누락하여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도 내용

[시론] 불신과 걱정만 앞서는 대선 D-50

대선이 꼭 50일 남았다. 당마다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선을 치르고 있어 조만간 대선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하지만 벌써 이번 대선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선 토론장

만 봐도 그렇다. 후보들 간의 막말과 뜬금없는 발언으로 눈총을 받는 일이 허다하고, 설익거나 허황한 공약도 난무하고 있다. 아예 제대로 된 공약이나 정책조차 갖추지 못한 채 뛰어들 후보들도 적지 않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겪고도,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전기로 삼기는 고사하고 구태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불신과 걱정만 앞서는 대선 D-50

시론

대선이 꼭 50일 남았다. 당마다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선을 치르고 있어 조만간 대선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하지만 벌써 이번 대선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선 토론장만 봐도 그렇다. 후보들 간의 막말과 뜬금없는 발언으로 눈총을 받는 일이 허다하고, 설익거나 허황한 공약도 난무하고 있다. 아예 제대로 된 공약이나 정책조차 갖추지 못한 채 뛰어든 후보들도 적지 않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겪고도,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전기로 삼기는 고사하고 구태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호감보다 비호감 비율이 높았던 것도 유권자의 실망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선이 끝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대립, 위기 경고등을 켜 경제 등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것도 큰 과제다. 이런 내·외부의 과고를 헤쳐갈 대통령감을 찾는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방점일 것이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냉기류 속에 주변 강국들 사이

의 한국 소외 분위기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국론을 모으지 못하는 우리 내부에도 책임이 없지 않을 것이다. 사드 배치만 해도 각 정파나 대선후보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관련국들의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경제 해법도 사분오열인 것은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의 즉각 폐지, 공무원의 정치참여 등을 약속했다. 민간은 구조개혁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면서 '공직 철밥통'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개혁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공무원 정치참여를 허용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무슨 복안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대선이 가열되면 후보들은 눈앞에 표만 보일 정도로 욕심이 앞선다고 한다. 가끔 평상심이 흔들리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것도 이런 심리 기제와 무관치 않다. 이번 대선이라고 해서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달라져야 한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후보들을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어느 후보가 이 엄중한 시기에 나라를 끌고 갈 만한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갖췄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대선 이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필스

<대구일보 2017년 3월 21일자 26면>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호감보다 비호감 비율이 높았던 것도 유권자의 실망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선이 끝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대립, 위기 경고등을 켜고 있는 경제 등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것도 큰 과제다. 이런 내·외부의 파고를 헤쳐갈 대통령감을 찾는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방점일 것이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냉기류 속에 주변 강국들 사이의 한국 소외 분위기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국론을 모으지 못하는 우리 내부에도 책임이 없지 않을 것이다. 사드배치만 해도 각 정파나 대선후보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관련국들의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경제 해법도 사분오열인 것은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의 즉각 폐지, 공무원의 정치참여 등을 약속했다. 민간은 구조개혁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면서 '공직 철밥통'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개혁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공무원 정치참여를 허용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무슨 복안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대선이 가열되면 후보들은 눈앞에 표만 보일 정도로 욕심이 앞선다고 한다. 가끔 평상심이 흔들리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것도 이런 심리 기제와 무관치 않다. 이번 대선이라고 해서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달라져야 한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후보들을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어느 후보가 이 엄중한 시기에 나라를 끌고 갈 만한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갖췄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대선 이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참조 - 연합뉴스에 게재된 사실 원문(박스 부분이 전제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임)>



국가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연합시론] 불신과 걱정만 앞서는 대선 D-50

송고시간 | 2017/03/20 17:28

[f](#)
[t](#)
[v](#)
[G+](#)
[BAND](#)
[blog](#)

(서울=연합뉴스) 대선이 꼭 50일 남았다. 각 당마다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선을 치르고 있어 조만간 대선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하지만 벌써 이번 대선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선 토론장만 봐도 그렇다. 후보들 간의 막말과 뜬금없는 발언으로 눈총을 받는 일이 허다하고, 설익거나 허황한 공약도 난무하고 있다. 아예 제대로 된 공약이나 정책조사 갖추지 못한 채 뛰어난 후보들도 적지 않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겪고도,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전기로 삼기는 고사하고 구태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호감보다 비호감 비율이 높았던 것도 유권자의 실망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선이 끝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대립, 위기 경고등을 켜고 있는 경제 등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것도 큰 과제다. 이런 내외부의 파고를 헤쳐갈 대통령감을 찾는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방점일 것이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냉기류 속에 주변 강국들 사이의 한국 소외 분위기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국론을 모으지 못하는 우리 내부에도 책임이 없지 않을 것이다. 사드배치만 해도 각 정파나 대선후보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관련국들의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경제 해법도 사본오열인 것은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 폐지, 공무원의 정치참여 등을 약속했다. 민간은 구조개혁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면서 '공직 철발톱'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개혁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공무원 정치참여를 허용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무슨 복안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최근 1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보수진영의 유력후보로 급부상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 아직 변변한 공약조차 보이지 않는다. 홍 지사는 대선판에 뛰어들자마자 거친 연사로 여러 번 구설에 올랐다. 후보주자의 노이즈 마케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선은 지키는 것이 좋다.

대선이 가열되면 후보들은 눈앞에 표만 보일 정도로 욕심이 앞선다고 한다. 가끔 평상심이 흔들리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것도 이런 심리 기제와 무관치 않다. 이번 대선이라고 해서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달라져야 한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후보들을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어느 후보가 이 엄중한 시기에 나라를 끌고 갈 만한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갖췄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대선 이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20 17:28 송고

| | |
|--------|---|
| 의결번호 | 2017대선-자심5 |
| 언론사 | 경남매일신문 주식회사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1125, 6층 대표이사 이미호 |
| 심의대상기사 | 경남매일 2017년 4월 10일자 23면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젠 국민 품으로」 제하의 칼럼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도
내용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젠 국민 품으로

경남은 대통령 DNA의 보고(寶庫)다. 11명의 대통령 중 김영삼·노무현·전두환 대통령을 배출했다. 경남지사들이 재임 중 대통령을 꿈꾸었지만 대통령은 커녕, 정당후보로 선출된 적도 없었지만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이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 그는 4년 4개월의 하방을 접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장미 대선'에 나섰다. 타지사들에 비해 한발 더 내디뎠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진영이 두동 각으로 갈라진데다 지리멸렬한 상황이어서 극적반전의 기대마

저 쉽지 않다. 이때문에 진보의 틈새에서 보수가치란 불씨를 되살리는 게 정치적 운명이라면 몰라도 '그 길'은 험로(險路)다.

하지만 도민들은 성원을 아끼지 않는다. 홍준표, 그는 가난을 프리미엄으로 삼는 듯 지난 아픔과 설움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모래시계 검사 → 4선 의원 → 집권여당 대표 → 경남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지만, 변방에서의 저항적 돌진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듯, 직설적이다. 이때문에 구설수도 잦다. 하지만, 카타르시스즘을 느끼게 한다는 평도 받고 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찾았다. 비주류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탓에 지금은 탄핵당한 대통령이라지만 지난 2012년 12월 1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와 2014년 6월 지방선거

박재근 칼럼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제 국민 품으로

경남은 대통령 DNA의 보고(寶庫)다. 11명의 대통령 중 김영삼·노무현·전두환 대통령을 배출했다. 경남지사들이 재임 중 대통령을 꿈꾸었지만 대통령은커녕, 정당후보로 선출된 적도 없었지만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이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 그는 4년 4개월의 하방을 겪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잠미 대선'에 나섰다. 타 지사들에 비해 한 발 더 내디뎠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진영이 두동 각으로 갈라진데다 지리멸렬한 상황이어서 극적반전의 기대마저 쉽지 않다. 이때문에 진보의 틈새에서 보수가치란 불씨를 되살리는 게 정치적 운명이라면 몰라도 '그 길'은 험로(險路)다.

하지만 도민들은 성원을 아끼지 않는다. 홍준표, 그는 가난을 프리미엄으로 삼는 듯 지난 아픔과 설움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모래시계 검사 → 4선 의원 → 집권여당 대표 → 경남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지만, 변방에서의 저항적 돌진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듯, 직설적이다. 이때문에 구설수도 잦다. 하지만, 카타르시즘을 느끼게 한다는 평도 받고 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찾았다. 비주류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탓에 지금은 탄핵당한 대통령이라지만 지난 2012년 12월 1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와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실세 '친박'의 심한 견제를 당했지만 경남도민이 선택했다.

홍준표 전 지사는 도민에게 당당함을 일깨웠고 미래먹거리를 위한 설계자였다. 그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만년 하위였던 '청렴도 1위'와 무려 1조 3천488억 원이라는 부채를 갚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재로'도 달성했다. 항공국가산단, 나노융합 국가산단,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등 창원공단 후 40년 만에 3개 국가산

본사 전무이사



단지 동시유치관 폐거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선정도 지사의 역량이 자리했다. 이어 한방·양방·해양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와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창원·거제 중심의 발전 축을 경남균형개발을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다.

또 진주의료원 폐쇄, 비리백대인 학교급식 감사, 포장만 화려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의 포기, 도산하기관 재배치, 수백억 원의 예산과 자치단체장의 줄 사위가 예상되는 도지사 보궐선거 미실시 등은 과거의 작폐 청산과 폐해 방지를 위한 소신의 결단이었지만, 옹고그름에 앞서 찬성과 반대로 확연하게 나뉘지는 아픔과 수많은 논란을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는 뜻을 꼭 관철시키려는 의지와 피아구분도 요구되지만,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배려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모두를 가까이 하길 바라는 것은 도민의 바람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흑백갈등을 종식시킨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친구를 가까이하라, 그리고 적은 더 가까이하라'란 말을 남겼다. 적을 곁에 두면서 새로운 자극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기에 갈등을 종식시킨 대

통령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세계적 부상과 함께 외교적 난제로 사드보복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북한의 핵 위협도 받는 가운데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에도 각종 규제와 정치난맥으로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뒤처지고 있다. 여기에 불균형 성장의 폐해,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을 증가는 국가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나라상황은 천하 대란의 위기다. 정치 대란, 경제 대란, 사회 대란, 남북 대란, 외교 대란 등 국가적 위기에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랄 뿐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밝힌 천하 대란의 시대에 대처가 요구되는 점에서 주목받는 것은 도정 운용이다. 경남미래 50년을 위해 불통이라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소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정성, 추진력과 과감한 결단력에 의한 도정 운용결과 공과(功過)는 차치하고라도 행정·재정 등 개혁의 지난 도정은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강점이다. 그는 "빨리 나라를 안정시키고 미래로 향해서 가야 할 때"라면서 "이 나라 청년들과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를 실행하려고 10일 퇴임식과 함께 먼 길을 떠난다. 바람이 때서워도 꽃이 피듯, 대통령의 길은 험해도 국가미래와 망가지 보수재건을 위한 운명이라면 사욕을 버리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해야 길이 열릴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님, 퇴임에 앞서 지사님이 남긴 '당당한 도민의 시대, 경남미래'의 완결에 도민들은 따름 흘릴 것입니다. 그 대신 경청, 관용과 소통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물인 정치의 현장에서 살아 필떡이는 지도자 꿈'의 성취를 바라는 경남도민 지지자들 뜻을 전합니다.

<경남매일 2017년 4월 10일자 23면>

때 실제 ‘친박’의 심한 견제를 당했지만 경남도민이 선택했다.

홍준표 전 지사는 도민에게 당당함을 일깨웠고 미래먹거리를 위한 설계자였다. 그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만년 하위였던 ‘청렴도 1위’와 무려 1조 3천488억 원이라는 부채를 갚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도 달성했다. 항공국가산단, 나노융합 국가산단,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등 창원공단 후 40년 만에 3개 국가산업단지 동시유치란 쾌거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선정도 지사의 역량이 자리했다. 이어 한방·양방·해양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와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창원·거제 중심의 발전 축을 경남균형개발을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다.

또 진주의료원 폐쇄, 비리백태인 학교급식 감사, 포장만 화려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의 포기, 도 산하기관 재배치, 수백억 원의 예산과 자치단체장의 출사퇴가 예상되는 도지사 보궐선거 미실시 등은 과거의 적폐 청산과 폐해 방지를 위한 소신의 결단이겠지만, 옳고 그름에 앞서 찬성과 반대로 확연하게 나뉘지는 아픔과 수많은 논란을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는 뜻을 꼭 관철시키려는 의지와 피아구분도 요구되지만,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배려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모두를 가까이 하길 바라는 것은 도민의 바람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흑백갈등을 종식시킨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친구를 가까이하라, 그리고 적은 더 가까이하라’란 말을 남겼다. 적을 곁에 두면서 새로운 자극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기에 갈등을 종식시킨 대통령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세계적 부상과 함께 외교적 난제로 사드보복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북한의 핵 위협도 받는 가운데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에도 각종 규제와 정치난맥으로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뒤처지고 있다. 여기에 불균형 성장의 폐해,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률 증가는 국가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나라상황은 천하대란의 위기다. 정치 대란, 경제 대란, 사회 대란, 남북 대란, 외교 대란 등 국가적 위기에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랄 뿐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밝힌 천하 대란의 시대에 대처가 요구되는 점에서 주목받는 것은 도정운영이다. 경남미래 50년을 위해 불통이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소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정성, 추진력과 과감한 결단력에 의한 도정운영결과 공과(功過)는 차치하고라도 행정·재정 등 개혁의 지난 도정은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강점이다. 그는 “빨리 나라를 안정시키고 미래로 향해서 가야 할 때”라면서 “이 나라 청년들과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를 실행하려고 10일 퇴임식과 함께 먼 길을 떠난다. 바람이 매서워도 꽃이 피듯, 대통령의 길은 험해도 국가미래와 망가진 보수재건을 위한 운명이라면 사욕을 버리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해야 길이 열릴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님, 퇴임에 앞서 지사님이 남긴 ‘당당한 도민의 시대, 경남미래’의 완결에 도민들은 맘을 흘릴 것입니다. 그 대신 경청, 관용과 소통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물인 정치의 현장에서 살아 펄떡이는 지도자 꿈’의 성취를 바라는 경남도민 지지자들 뜻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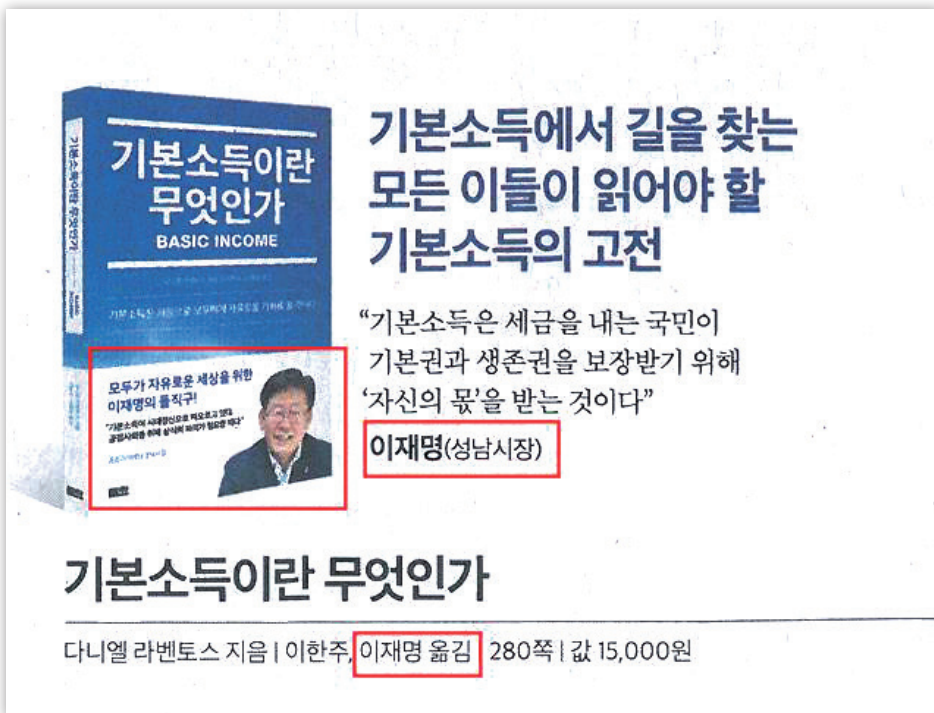
| | |
|---------------|--|
| 의결번호 | 2017대선-자심9 |
| 언론사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52 대표이사 방상훈 |
| 심의대상기사 | 조선일보 2017년 5월 9일자 B7면 「[두근두근 뇌운동] [629]얼굴 삼행시」 제하의 기사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기억하도록 하는 뇌 운동 훈련자료를 선거일 당일에 게재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선일보 2017년 5월 9일자 B7면>

3. 권고

| | |
|--------|--|
| 의결번호 | 2017대선-자심2 |
| 언론사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경향신문) 서울 중구 정동길 3 대표이사 이동현 |
| 심의대상기사 | 경향신문 2017년 3월 22일자 2면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제하의 광고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명의를 드러나는 저서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2항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1항,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향신문 2017년 3월 22일자 2면>

| | |
|---------------|--|
| 의결번호 | 2017대선-자심3 |
| 언론사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간경향) 서울 중구 정동길 3 대표이사 이동현 |
| 심의대상기사 | 주간경향 2017년 3월 21일자 21면 「명사들의 아주 특별한 서재 - 책과 연애하는 41가지 방법」제하의 광고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명이가 드러나는 저서광고로 게재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2항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1항, 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간경향 2017년 3월 21일자 21면>

| | |
|--------|--|
| 의결번호 | 2017대선-자심6 |
| 언론사 |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4층 대표이사 최정호 |
| 심의대상기사 | 시민일보 2017년 4월 18일자 3면 「'당선 가능성' 문재인 vs. '더 좋은 후보' 안철수?」 제하의 칼럼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주변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특정 후보자를 '더 좋은 후보'로 표현하고, '더 좋은 후보'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여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도
내용

‘당선 가능성’ 문재인 vs. ‘더 좋은 후보’ 안철수? 고하승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대선후보 지지율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이미 2016년 4·13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당시 대부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과반 의석을 예상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실제 총선 사흘 전 여론조사 업체들이 예상했던 의석수는 새누리당 최소 157석~최대 175석, 더불어민주당 83석~100석, 국민의당 25석~32석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는데 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123석을 차지해 원내 1당이 됐다. 국민의당도 최대 예측 의석수를 뛰어넘어 38석을 차지했다.

이번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여론조사의

‘당선 가능성’ 문재인 vs. ‘더 좋은 후보’ 안철수?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대선후보 지지율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이미 2016년 4.13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당시 대부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과반 의석을 예상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실제 총선 사흘 전 여론조사 업체들이 예상했던 의석수는 새누리당 최소 157석~최대 175석, 더불어민주당 83석~100석, 국민의당 25석~32석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는데 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123석을 차지해 원내 1당이 됐다. 국민의당도 최대 예측 의석수를 뛰어넘어 38석을 차지했다.

이번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여론조사의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95년 조스퐁과 시라크가 결선에서 맞붙었을 때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은 조스퐁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결과는 시라크 당선이었다. 미국의 경우 역시 여론조사 기관은 트럼프 당선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아침 햇살

고 하 승 편집국장

그런데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다. 이게 문제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

여론조사업체 칸타퍼블리가 조선일보의 의뢰로 1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자 가상대결에서 문재인 후보 36.3%, 안철수 후보 31%로 문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조금 앞섰다.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7.2%), 심상정 정의당 후보(2.7%),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2.1%)로 나타났다.

문재인-안철수 가상 양자대결에선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경우도 있지만, 다자 대결에선 여전히 문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많았다. 하지만 그 차이는 오차범위 안팎이어서 사실상 접전 양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식만 심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이 조사에서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0.2%의 응답자가 문재인 후보를, 26.6%가 안철수 후보를 꼽았다. 이어 홍준표 2.2%, 유승민 후보 0.6%, 심상정 0.2%, ‘없다·모르겠다’ 20.3%다.

그런데 ‘주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안 후보 30.4%, 문 후보 28.5%로 비록 오차범위 이내이지만 ‘안철수’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이어 홍 후보 4%, 유 후보 1.3%, 심 후보 0.4%, ‘없다·모르겠다’ 35.5%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고 응답률은

15.3%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마디로 당선 가능성은 대체론 후보인 문재인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최근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안철수가 더 좋은 후보라고 생각한 유권자들 가운데 일부가 그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투표현장에 나가지 않아 기권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심각한 여론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 각 언론사들이 지극치럼 무분별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수치를 마치 순위를 매기듯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이 ‘더 좋은 후보’에게 소신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지양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거듭 말하지만 유권자들로 하여금 ‘당선 가능성’과 ‘더 좋은 후보’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만드는 여론조사 결과라면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

모쪼록 유권자들은 ‘당선 가능성’ 때문에 ‘더 좋은 후보’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시민일보 2017년 4월 18일자 3면>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95년 조스팽과 시라크가 결선에서 맞붙었을 때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은 조스팽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결과는 시라크 당선이었다. 미국의 경우 역시 여론조사 기관은 트럼프 당선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다. 이게 문제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

여론조사업체 칸타퍼블릭이 조선일보의 의뢰로 1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자 가상대결에서 문재인 후보 36.3%, 안철수 후보 31%로 문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7.2%), 심상정 정의당 후보(2.7%),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2.1%)로 나타났다.

문재인-안철수 가상 양자대결에선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경우도 있지만, 다자 대결에선 여전히 문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많았다. 하지만 그 차이는 오차범위 안팎이어서 사실상 접전양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잘 못된 인식만 심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이 조사에서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0.2%의 응답자가 문재인 후보를, 26.6%가 안철수 후보를 꼽았다. 이어 홍준표 2.2%, 유승민 후보 0.6%, 심상정 0.2%, '없다·모르겠다' 20.3%다.

그런데 '주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안 후보

30.4%, 문 후보 28.5%로 비록 오차범위 이내이지만 '안철수'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이어 홍 후보 4%, 유 후보 1.3%, 심 후보 0.4%, '없다·모르겠다' 35.5%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임의전화 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이고 응답률은 15.3%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마디로 당선 가능성은 대세론 후보인 문재인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최근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안철수가 더 좋은 후보라고 생각한 유권자들 가운데 일부가 그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투표현장에 나가지 않아 기권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심각한 여론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 각 언론사들이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수치를 마치 순위를 매기 듯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이 '더 좋은 후보'에게 소신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지양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거듭 말하지만 유권자들로 하여금 '당선 가능성'과 '더 좋은 후보'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만드는 여론조사 결과라면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

모쪼록 유권자들은 '당선 가능성' 때문에 '더 좋은 후보'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 |
|--------|--|
| 의결번호 | 2017대선-자심7 |
| 언론사 | 주식회사 영남일보 대구 동구 동대구로 441 대표이사 손인락 |
| 심의대상기사 | 영남일보 2017년 4월 24일자 11면 「5월9일 대통령 선거-대권은?」 제하의 광고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
| 이유 | 위 언론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된다는 예측을 포함한 역학연구소 광고를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줄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5월9일 대통령선거 -대권은?

이미 카페를 통해 예언한 이번 대통령은
靑龍의 깃발아래서 일어난 **문재** 없는
사람 **(ㄴ)** 이 잡는다!!!

수승한 운명감정 (예약)
특출한 이름/상호 <작명>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과 인용, 그시기 음력2월까지 정확히 예측한 작금에 최고의 기문둔갑 술객인 운곡선생의 예언기록이 카페 <http://cafe.naver.com/48goq>에 있습니다.



- ◆ 최고의 운명학 "운곡-奇門遁甲"상/하 (P.1793) 실증예문(803문)
- ◆ 왕초보에서 최고의 고수 에이르는 "동영상 강의" -561시간(2324GB)

(사주프로그램 무료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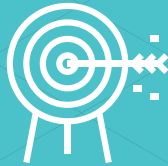
기문둔갑미래운명연구소

연락처 : 010-9392-5222
주소: 대구시 서구 비산동 541-32

<영남일보 2017년 4월 24일자 11면>



제2장 시정요구심의



| | |
|--------|---|
| 의결번호 | 2017대선-시심1 |
| 시정요구인 | 문재인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
| 피시정요구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0 대표이사 김교준 |
| 심의대상기사 | 중앙일보 2017년 4월 13일자 34면 「한 달 후 대한민국」 및 4월 20일자 34면 「3주 후 대한민국」 제하의 칼럼 |
| 주문 |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신청취지 | 심의대상 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요구한다. |
| 이유 | <p>피시정요구인은 2회에 걸쳐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자의 당선을 가정한 칼럼을 게재하였으며 이중 4월 13일자 「한 달 후 대한민국」 제하의 칼럼에서는 미국의 북쪽에 후보자가 대응하는 내용을, 4월 20일자 「3주 후 대한민국」 제하의 칼럼에서는 후보자가 소속당 외의 정치인들과 협치하는 내용을 상상하고 그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표명하였다.</p> <p>시정요구인은 위 심의대상 칼럼이 문재인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안보불안이 발생할 것처럼 묘사하고, 후보자의 대북정책, 집권능력, 경제철학 등을 폄하하였으며, 후보자를 ‘좌파 대통령’, ‘정서적 친북주의자’ 등 편향적으로 표현하고, 후보자의 정책 및 한반도 정세를 기초로 장래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p> <p>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언론인으로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자의 당선을 가정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예측한 것일 뿐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고, 문재인 후보자, 김관진 안보실장 등의 평소 발언 및 행동 등을 토대로 작성하여 객관적 근거가 있으며, 상상임을 명확히 밝힌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변하였다.</p> <p>살피건대, 언론이 보도를 통해 선거 후보자의 자질, 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이고, 보도의 형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반드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독자가 오도되거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표현해야 한다. 심의대상 칼럼은 비록 상상이라고 밝히긴 하였으나 특정 후보자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그 내용 일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유사 칼럼을 연속적으로 게재한 점, 피시정요구인이 중앙일간지로서 영향력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위 심의대상 칼럼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인정된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한 달 후 대한민국

이정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2017년 5월 15일 아침부터 시장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었다. 주가(KOSPI)는 1000 밑으로 주저앉았고 원화 값은 달러당 2000원을 훌쩍 넘겼다. 사람들은 생수를 사 재고, 라면을 박스째 챙기느라 마트로 몰려들었다. '대북 폭격설, 오늘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전쟁의 공포가 이날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급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찾았다. 김관진은 박근혜 정부 사람이지만 아직 문재인은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할 시간이 없었다. 내각도 마찬가지, 새 정부 내각이 출범하려면 두세 달은 더 걸릴 터

였다. 광화문 집무실도 완공되지 않아 문재인은 청와대를 임시 집무실로 사용 중이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통보하겠지요?" 김관진은 딱 잘랐다. "한 달 전부터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때린다. '문재인이 되면 통보 없이 때리고, 안철수가 되면 통보하고 때리고, 홍준표가 되면 상의하고 때린다'라고."

애들러 말했지만, 문재인이 그 말뜻을 못 알아들을 리 없다. 한 달 전 시리아 폭격 때는 미국이 한국에 알려줬다. 김관진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20여 분 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다 나 때문이란 말이지, 좌파 대통령이라서." 간신히 38%의 득표로 대통령이 됐다. 미국의 북폭설로 홍준표에게 20%의 표가 몰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웃고 있을 사람은 안철수였을지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 에겐 일등공신인 셈이다. 하지만 취임 일주일 이다 되도록 트럼프의 축하 전화도 받지 못한 터다. 애초 며칠 전 취임사에 '남북 대화, 북한 방문, 개성공단 재개'란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런 말들이 트럼프를 자극했을 수 있다. "나는 빼고 싶었는데, 참모들이 우기는 통에... 휴~. 나는 왜 그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할까?" 혼잣말을 되뇌며 문재인은 절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다고 정말 북폭을? 가능성은 0.00001%지만 완전히 무시할 순 없었다.

문재인은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북폭이 이뤄지면 즉시 북한의 장사정포가 남한을 향해 불을 뿜을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김관진은 단호했다. '즉각 대응 사격, 지휘부까지 처절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그제 연평도 사태 이후 군의 지침입니다.' 문재인은 "그럴 순 없다. 대응 사격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관진은 즉시 사표를 던졌다. "군은 만에 하나를 준비하는 집단, 그 만에 하나의 순간에 침묵하라고 하면 존재 의의가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도 동조했다. 나라는 절체절명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문제

전쟁의 공포가 지배할 때 리더가 흔들려선 안 된다

인의 청와대는 어쩔 줄 모르고 그저 분노를 터뜨릴 뿐이었다. 누군지도 모를 상대를 향해.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저 상상이다. 하필 왜 문재인이냐고? 그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서다. 4월 전쟁설이 돌 만큼 한반도 상황이 위급하다. 문재인도 위급함을 안다. 요즘 들어 평소 소신을 조금 굽히고 안보로 한 발짝 우클릭했다. 하지만 그 우클릭이라는 게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정도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한가한 대책일 뿐이다. 안철수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햇볕정책의 신도' 박지원을 대입하면 답이 안 나온다. 하필 절체절명의 한반도에 문재인과 안철수, 안보 신뢰 자산이 가장 부족한 두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판이다.

남은 한 달, 이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두루뭉실한 말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아예 두 사람이 끝장 토론을 벌여보라. 그래서 안보 이슈를 국가적 담론으로 끌어올려 보라. 그걸 보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한 달 후, 석 달 후, 일 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내가 뿜을 그 가 어떻게 행동할지 국민은 묻고 알아야 한다. 이번 투표야말로 정말 국가 존망이 내 손에 달린 것일 수 있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보도
내용

[이정재의 시사각각] 한 달 후 대한민국

전쟁의 공포가 지배할 때 리더가 흔들려선 안 된다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2017년 5월 15일. 아침부터 시장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었다. 주가(KOSPI)는 1000 밑으로 주저앉았고 원화 값은 달러당 2000원을 훌쩍 넘겼다. 사람들은 생수를 사 재고, 라면을 박스째 챙기느라 마트로 몰려들었다. ‘대북 폭격설, 오늘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전쟁의 공포가 이날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급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찾았다. 김관진은 박근혜 정부 사람이지만 아직 문재인은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할 시간이 없었다. 내각도 마찬가지로, 새 정부 내각이 출범하려면 두세 달은 더 걸릴 터였다. 광화문 집무실도 완공되지 않아 문재인은 청와대를 임시 집무실로 사용 중이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통보하겠지요?” 김관진은 딱 잘랐다. “한 달 전부터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때린다. ‘문재인이 되면 통보 없이 때리고, 안철수가 되면 통보하고 때리고, 홍준표가 되면 상의하고 때린다’라고.”

에둘러 말했지만, 문재인이 그 말뜻을 못 알아들을 리 없다. 한 달 전 시리아 폭격 때는 미국이 한국에 알려줬다. 김관진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20여 분 통화를 했다고 한다. 그러

나 이번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다 나 때문이란 말이지, 좌파 대통령이라서.” 간신히 38%의 득표로 대통령이 됐다. 미국의 북폭설로 홍준표에게 20%의 표가 몰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웃고 있을 사람은 안철수였을지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에겐 일등공신인 셈이다. 하지만 취임 일주일도 다 되도록 트럼프의 축하 전화도 받지 못한 터다. 애초 며칠 전 취임사에 ‘남북 대화, 북한 방문, 개성공단 재개’란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런 말들이 트럼프를 자극했을 수 있다. “나는 빼고 싶었는데, 참모들이 우기는 통에... 휴~. 나는 왜 그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할까.” 혼잣말을 되뇌며 문재인은 절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다고 정말 북폭을? 가능성은 0.00001%지만 완전히 무시할 순 없었다.

문재인은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북폭이 이뤄지면 즉시 북한의 장사정포가 남한을 향해 불을 뿜을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김관진은 단호했다. ‘즉각 대응 사격, 지휘부까지 처절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그게 연평도 사태 이후 군의 지침입니다.’ 문재인은 “그럴 순 없다. 대응 사격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관진은 즉시 사표를 던졌다. “군은 만에 하나를 준비하는 집단, 그 만에 하나의 순간에 침묵하라고 하면 존재 의의가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도 동조했다. 나라는 절체절명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문재인의 청와대는 어쩔 줄 모르고 그저 분노를 터뜨릴 뿐이었다. 누군지도 모를 상대를 향해.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저 상상이다. 하필 왜 문재인이냐고? 그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서다. 4

월 전쟁설이 돌 만큼 한반도 상황이 위급하다. 문재인도 위급함을 안다. 요즘 들어 평소 소신을 조금 굽히고 안보로 한 발짝 우클릭했다. 하지만 그 우클릭이라는 게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정도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한가한 대책일 뿐이다. 안철수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햇볕정책의 신도’ 박지원을 대입하면 답이 안 나온다. 하필 절체절명의 한반도에 문재인과 안철수, 안보 신뢰 자산이 가장 부족한 두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판이다.

남은 한 달, 이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두루뭉실한 말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아예 두 사람이 끝장 토론을 벌여보라. 그래서 안보 이슈를 국가적 담론으로 끌어올려 보라. 그걸 보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한 달 후, 석 달 후, 일 년 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내가 뽑을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국민은 묻고 알아야 한다. 이번 투표야말로 정말 국가 존망이 내 손에 달린 것일 수 있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3주 후 대한민국

이정재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5월 15일, 아침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활기가 흘렀다. 오늘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 표결이 있는 날이다.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다. 지난주 청문회도 요식행위처럼 지나갔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물론 보수 의 적통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도 크게 반발하지 못했다. 청문회는 유아무야, 간혹 더담이 나올 정도였다. 언론에선 아예 '통과의례'란 제목을 뽑고 있었다. 날 세운 공격도, 무조건 국정의 뒷다리를 잡아

채는 야당의 모습도 없었다. 하기가 사실상 국민투표로 당선된 총리 아닌가.

돌이켜보면 김종인 총리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투표 일주일 전 문재인은 승부수를 던졌다. "당선되면 김종인을 국무총리로 모시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그와 임기를 같이할 것이며, 헌법이 규정한 책임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를 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으로 확인받겠다고 했다. 사실상 미국 대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처럼 모시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완벽한 보수주의자'로 불린 마이크 펜스를 러닝메이트로 영입한 것과 같았다.

바짝 쫓아오는 안철수 후보를 떼어놓기 위한 초강수였다. 선거관이 본격 시작된 4월 중순 문재인은 핵심 구호였던 '적폐 청산'을 청산하고 대신 대통령-협치를 말했지만 중도·보수의 표심은 꺾이지 않았다. 베레모를 쓰고 안보를 외쳤지만 '정서적 친북주의자'란 단단한 딱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안철수도 안보와 협치를 더 세고 강하게 말하고 있었다. 화끈한 한 방, 차별화가 필요했다.

협치의 증거는 뭔가. 사람이다. 통합이라는 말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인사다. 적폐 청산의 진정성은 '내 안의 적폐부터

청산할 때' 나온다. 협치의 왕도는 적(상대)의 사람까지 중용하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의 아이콘 김종인은 안보 보수의 상징이기도 하다. 문재인은 독선이 싫다며 당을 박차고 나간 '적'이기도 하다. 그를 삼고초려 끝에 모신 것으로 사실상 대선 레이스는 막을 내렸다. 다음 일은 그냥 순리대로 흘러갔다. 김종인은 신(新)보수의 적자로 떠오른 유승민을 경제 부총리로 지명했다. 유승민의 경제 철학은 더불어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터였다.

문재인은 무너진 4강 외교 복원도 협치로 시작했다. 안철수 후보에게 중국 특사를, 반기문에게 미국 특사를 부탁했다. 부처 개편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장관 임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조각이 끝날 터였다. 투표 전 많은 우려는 기우로 끝났다. '누가 되든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최소 두세 달은 동거해야 한다. 야당의 발목 잡기로 장관 임명은 커

녕 정부 조직 개편도 안 되는 큰 국정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총리 임명에만 해가 바뀔지도 모른다. 안보 불안으로 태극기 부대가 연일 광화문광장을 메우고 시위를 벌일 것이다.' 김종인 국민투표 총리가 이 모든 우려를 잠재운 것이다.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에 한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다. 문재인은 입가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은 많이 다르다. 문재인은 4월 후보 수락 때 "새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만들어 국정 혼란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캠프 내 분위기로 보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캠프 관계자는 "총리·장관 인선은 시기상조"라며 "노리는 사람이 많아 말도 꺼내기 힘들다"고 전했다. 게다가 인선을 미루는 게 확장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실정이나 러닝메이트 총리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닐 것이다.

이런 선거는 다르다. 초유의 야야(野野) 전쟁이다. 결국 확장성에서 승부가 날 것이다. 러닝메이트 총리는 현실 모르는 백면서생의 엉뚱한 상상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 상상력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았나. 뭐는 못하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상대를 겨냥한 후보, 100%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후보, 그가 누구든 나는 그에게 한표를 던지려나.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협치·통합 말만 하지 말고
인사·사람으로 보여달라

보도
내용

[이정재의 시사각각] 3주 후 대한민국

협치·통합 말만 하지 말고 인사·사람으로 보여달라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5월 15일. 아침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활기가 흘렀다. 오늘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 표결이 있는 날이다.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다. 지난주 청문회도 요식행위처럼 지나갔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물론 보수의 적통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도 크게 반발하지 못했다. 청문회는 유아무야, 간혹 덕담이 나올 정도였다. 언론에선 아예 ‘통과의례’란 제목을 뽑고 있었다. 날 세운 공격도, 무조건 국정의 뒷다리를 잡아채는 야당의 모습도 없었다. 하기가 사실상 국민투표로 당선된 총리 아닌가.

돌이켜보면 김종인 총리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투표 일주일 전 문재인은 승부수를 던졌다. “당선되면 김종인을 국무총리로 모시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그와 임기를 같이할 것이며, 헌법이 규정한 책임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를 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으로 확인받겠다고 했다. 사실상 미국 대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처럼 모시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완벽한 보수주의자’로 불린 마이크 펜스를 러닝메이트로 영입한 것과 같았다.

바짝 쫓아오는 안철수 후보를 떼어내기 위한 초강수였다. 선거판이 본격 시작된 4월 중순 문재인은 핵심 구호였던 ‘적폐 청산’을 청산하고 대신 대통합·협치를 말했지만 중도·보수의 표심은 꿈쩍하

지 않았다. 베레모를 쓰고 안보를 외쳤지만 ‘정서적 친북주의자’란 단단한 딱지는 좀체 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안철수도 안보와 협치를 더 세고 강하게 말하고 있었다. 화끈한 한 방, 차별화가 필요했다.

협치의 증거는 뭐가. 사람이다. 통합이라는 말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인사다. 적폐 청산의 진정성은 ‘내 안의 적폐부터 청산할 때’ 나온다. 협치의 왕도는 적(상대)의 사람까지 중용하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의 아이콘 김종인은 안보 보수의 상징이기도 하다. 문재인은 독선이 싫다며 당을 박차고 나간 ‘적’이기도 하다. 그를 삼고초려 끝에 모신 것으로 사실상 대선 레이스는 막을 내렸다. 다음 일은 그냥 순리대로 흘러갔다. 김종인은 신(新)보수의 적자로 떠오른 유승민을 경제 부총리로 지명했다. 유승민의 경제 철학은 더불어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터였다.

문재인은 무너진 4강 외교 복원도 협치로 시작했다. 안철수 후보에게 중국 특사를, 반기문에게 미국 특사를 부탁했다. 부처 개편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장관 임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조각이 끝날 터였다. 투표 전 많은 우려는 기우로 끝났다. ‘누가 되든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최소 두세 달은 동거해야 한다. 야당의 발목 잡기로 장관 임명은 커녕 정부 조직 개편도 안 되는 큰 국정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총리 임명에만 해가 바뀔지도 모른다. 안보 불안으로 태극기 부대가 연일 광화문광장을 메우고 시위를 벌일 것이다.’ 김종인 국민투표 총리가 이 모든 우려를 잠재운 것이다.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에 한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다. 문재인은 입가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다시 말하지만 이긴 그냥 상상이다. 현실은 많이 다르다. 문재인은 4월 후보 수락 때 “새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만들어 국정 혼란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캠프 내 분위기로 보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캠프 관계자는 “총리·장관 인선은 시기상조”라며 “노리는 사람이 많아 말도 꺼내기 힘들다”고 전했다. 게다가 인선을 미루는 게 확장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실정이니 러닝메이트 총리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닐 것이다.

이번 선거는 다르다. 초유의 야야(野野) 전쟁이다. 결국 확장성에서 승부가 날 것이다. 러닝메이트 총리는 현실 모르는 백면서생의 엉뚱한 상상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 상상력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았다. 뉘는 못하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상대를 껴안는 후보, 100% 대한민국을 실천하는 후보, 그가 누구든 나는 그에게 한표를 던지련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부록



1.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 심의대상 매체현황



5. 색인

1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7. 2.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기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기본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선거기사심의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2. 선거기사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의무
3.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

제3조(심의고려사항)

위원회는 제2조의 심의기본원칙 위반 여부를 심의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정도와 비중
2.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3.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4. 언론사의 심의기준 반복 위반 여부
5.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언론사의 의도성 여부

제2장 일반 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2조제1호의 공정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기사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기사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일방적, 의도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또는 기고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5조(형평성)

제2조제1호의 형평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 또는 사실과 다르게 변형한 기사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6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조제2호의 객관성 및 사실 보도의무를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기사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지 않은 기사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을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
4.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기사
5.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기사
6.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거나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기사
7.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기사
8.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기사
9.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사

제7조(정치적 중립성)

제2조제3호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선거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념,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비난 또는 비방하거나 미화하는 기사
2. 그 밖에 위 1호에 준하는 기사

제3장 세부 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

인터뷰 및 인용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포함한 개인이나 정당을 포함한 단체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및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덧붙여 보도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상반된 견해를 균형 있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
3.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 또는 변형시켜 편집, 게재한 경우 또는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0조(사진게재)

선거와 관련한 사진 또는 이미지 기사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와 관련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
2.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원본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경우
3. 선거운동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참가 인원이나 내용 등을 왜곡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감정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가 아닌 개인 또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4장 결 정

제13조(제재결정 등)

① 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삭 제> (2017. 2. 13.)
2. 정정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반론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결정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의사실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경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의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권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언론사에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개정 2017. 2. 3. 규칙 제2017- 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따라 설치하는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선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각종 규칙을 준용한다.

제 2 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직무)

-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4조(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 ①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경우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피추천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장 등)

-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사람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기 등)

-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 ②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의결정족수)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소집 등)

-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심의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서면의결에 대하여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심의 및 시정요구

제12조(심의안건)

- ①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등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 ② 심의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간행물등 제출 요구)

-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정기간행물등의 제출 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요구)

- ① 후보자가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정을 요구한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가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

-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7. 2. 3.>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이 명백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

- ①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결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요구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

- 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등에 대한 제15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시정요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서면의결을 위하여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재조치의 공개)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제재대상 언론사명과 해당 결정내용 등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재심청구)

-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 ②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심청구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및 관련 당사자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반론보도청구

제19조(반론보도청구회부)

- ①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 ③ 심의위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팩시밀리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결정 및 통보)

-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할 경우 해당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 ④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조정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2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3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부 칙 <규칙 제2017-1호>

이 규칙은 2017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승낙서

| | | | |
|----|----|------|--------|
|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 직업 |
| | 한자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 | e-mail |
| 학력 | | | |
| 경력 | | | |

위 본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 ○ (인)

인론중재위원회 귀중

주 :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2~3개 정도를 기재합니다.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법률 제14556호, 2017.2.8. 일부개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④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

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⑤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⑦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 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
 3.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등 처리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 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⑪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원”으로, “선거범죄” 또는 “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로 본다.
- ⑫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선거기간)

-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 <2002.3.7.>
- ② 삭제 <2004.3.12.>
-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4조(선거일)

-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 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196조(선거의 연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염전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9조(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 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담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④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체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⑭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와 공표제한 등)

-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한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한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당·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 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당·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방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 ####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66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 ③ 제69조제1항 후단(광고횟수를 말한다)·제2항·제5항·제8항 및 제9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정당”으로 본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 ①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 ②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 ④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전단에 따른 선거일(제203조제3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을 말한다)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제8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3.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 거. 제108조의3을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너.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3. 제108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
 4.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⑩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⑪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심의대상 매체현황

- ※ 총 419개 매체
- 일간지 130개(중앙 24, 지역 103, 기타 3)
 - 주간지 263개(종합 41, 지역 222)
 - 월간지 17개
 - 뉴스통신 9개

1. 일간지 130개

| | | |
|--------------------|------------------------------|--|
| 중앙 일간지 (24) | 종합일간지(11)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 | 경제지(7) |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
| | 스포츠지(6) |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
| 지역 일간지 (103) | 서울(19) | 내외일보, 매일일보, 새한일보, 서울매일, 서울일보, 선경일보, 시민일보, 신아일보, 아시아경제, 아시아글로벌, 아시아일보, 아시아타임즈, 아시아투데이, 에너지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일간투데이, 한성일보, 한민일보 |
| | 경기/인천 (19) |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도신문,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인종합일보, 기호일보, 대한투데이, 도민일보, 수도권일보, 수도일보, 시대일보, 인천일보, 일간경기, 전국매일, 중부일보, 현대일보 |
| | 충북(6) |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
| | 대전/충남(7) | 금강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
| | 강원(2) |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
| | 부산/울산(7) | 경상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일간리더스경제 |
| | 대구/경북(11) |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신문, 경북일보, 경안일보, 대경일보, 대구광역신문,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
| | 경남(7) |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일간뉴스경남, 창원일보, 한남일보 |
| | 광주/전남(11) |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광주타임즈,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호남일보 |
| | 전북(9) | 새만금신문,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매일신문,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
| 제주(5) |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주신보, 한라일보 | |
| 기타 일간지(3) | |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농민신문 |

2. 주간지 : 263개

| | | |
|--------------------|---------------|---|
| 중앙 주간지 (41) | 잡지(15) | 뉴스위크, 뉴시스아이즈, 매경이코노미, 미래한국, 시사뉴스, 시사오늘, 시사인, 시사저널,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리뷰, 주간경향, 주간동아, 주간조선, 한겨레21, CNB저널 |
| | 타블로이드 (12) | 뉴스포스트, 미디어워치, 민주신문, 사건의내막,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한국, 주간현대, 중앙선데이, 토요경제 |
| | 기타주간지 (14) | 글로벌이코노믹, 금융경제, 기자협회보, 뉴스웨이, 대한금융신문, 마케팅신문, 미디어오늘, 변형신문, 서울파이낸스, 아시아에너지경제, 여성신문, 월드경제, 이뉴스투데이, 현대경제신문 |
| 지역 주간지 (222) | 서울(32) | 강남내일신문, 강서양천일보, 경동신문, 관악신문, 구로오늘, 구로타임즈, 금천in, 노원신문, 뉴스타겟, 동대문신문, 동작포커스, 마포신문,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신문, 서대문자치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서초구민신문, 성북신문, 세계로컬뉴스, 양천신문, 영등포신문, 영등포투데이, 은평시민신문, 은평신문, 종로저널, 주간 서부신문, 주간 시정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중랑신문 |
| | 경기(29) | 가평타임즈, 고양신문, 과천문화신문, 군포신문, 김포신문, 남양주신문, 더 피플, 반월신문, 부천신문, 북경기신문, 시사인천, 안산정론신문, 안산타임스, 안양신문, 안양광역신문, 여주신문, 연수신문, 용인신문, 자치안성, 전국도민신문, 주간 고양인, 투데이안산, 파주저널, 평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포천뉴스, 포천신문, 포천일보, 화성신문 |
| | 대전/충남(17) | 공주신문, 놀미신문, 뉴스서천, 당진투데이, 보령신문, 서산타임즈, 서천신문, 시사충청, 주간 금산신문, 주간 당진시대, 주간 예산신문, 주간 온양신문, 주간 온주신문, 천안신문, 충남신문, 태안미래신문, 홍성신문 |
| | 충북(12) | 괴산중평자치신문, 보은사람들, 보은신문, 영동신문, 옥천신문, 음성뉴스, 음성신문, 제천신문, 증평신문, 진천시사신문, 충주신문, 충청리뷰 |
| | 강원(14) | 강릉신문, 강원고성신문, 강원리뷰, 강원북부신문, 강원신문, 강원종합복지신문, 삼척동해신문, 영월신문, 원주투데이, 주간 설악신문, 철원신문, 태백신문, 홍천신문, 횡성신문 |
| | 부산/울산(4) | 부울경인, 울산저널, 울산종합신문, 정관타임스 |
| | 대구/경북(28) | 경북자치신문, 경북중부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경주시민신문, 경주신문, 고령신문, 군위신문, 군위팔공신문, 김천신문, 뉴스상주, 대구푸른신문, 상주시민신문, 상주신문, 성주자치신문, 안동신문, 영덕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주신문, 영천시민신문, 예천신문, 울진마당, 울진신문, 의성문소신문, 의성신문, 청도신문, 칠곡신문, 팔공신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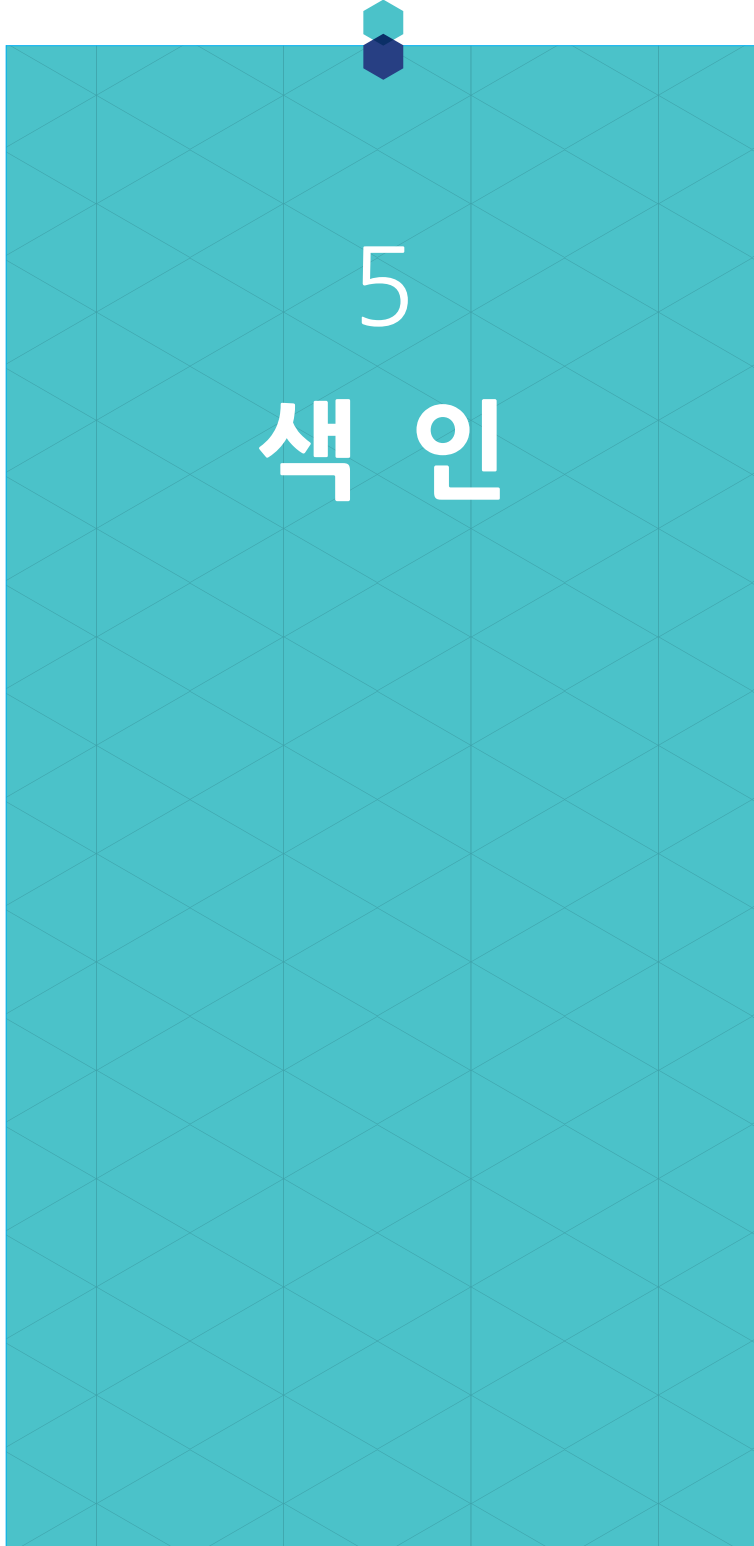
| | | |
|--------------------|-----------|--|
| 지역 주간지 (222) | 경남(31) |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거창신문, 거창韓신문, 경남여성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신문, 김해뉴스, 남해시대, 남해신문, 뉴스사천,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산청시대, 새거제신문,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의령신문, 주간아름신문, 주간동영뉴스,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 하동신문, 한려투데이, 함안군민신문, 함안뉴스, The 함안신문, 함안이라신문, 함양신문, 함천대야신문 |
| | 광주/전남(35) | 강진우리신문, 고흥타임즈, 광양신문, 굿뉴스피플, 나주투데이, 담양뉴스, 담양신문, 담양신문, 더페스트뉴스신문사, 목포시민신문, 목포타임즈,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시민의소리, 여수뉴스타임즈, 여수신문, 영광2, 영광신문, 영암신문, 예향진도신문, 완도신문, 우리군민신문, 장성군민신문, 전남저널, 전남중앙신문, 전남희망신문, 주간 강진신문, 주간 나주신문, 주간 장흥신문, 주간 함평신문, 해남군민신문, 해남우리신문, 호남타임즈, 화순군민신문, 화순일보 |
| | 전북(19) | 고창신문,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시민의신문, 김제신문, 남원시민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시사전북, 완주전주신문, 익산신문, 익산투데이, 전북신문고, 정읍신문, 주간군산신문, 주간소통신문, 진안신문, 주간해피데이 |
| | 제주(1) | 서귀포신문 |

3. 월간지 : 17개

| | | |
|-------------------|---------|---|
| 중앙 월간지 (16) | 종합지(11) | 경제풍월, 뉴스메이커, 서울21, 시사뉴스타임, 시사뉴스피플, 시사매거진,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폴리피플, ANDA |
| | 여성지(5) | 여성동아, 여성조선, 여성중앙, 우먼센스, 주부생활 |
| 지역 월간지(1) | | 전라도닷컴 |

4. 뉴스통신 : 9개

| | |
|---------|---|
| 뉴스통신(9) | 국제뉴스,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1코리아, 서울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 포커스뉴스, KNS뉴스통신, NSP뉴스통신 |
|---------|---|



1. 결정유형별

| 구분 | 결정 유형 | 의결 번호 | 매체명 | 면수 |
|------|-------|------------|------|-----|
| 자체심의 | 경고 | 2017대선-자심4 | 미래한국 | 75 |
| | 경고 | 2017대선-자심8 | 주간한국 | 89 |
| | 주의 | 2017대선-자심1 | 대구일보 | 94 |
| | 주의 | 2017대선-자심5 | 경남매일 | 98 |
| | 주의 | 2017대선-자심9 | 조선일보 | 101 |
| | 권고 | 2017대선-자심2 | 경향신문 | 102 |
| | 권고 | 2017대선-자심3 | 주간경향 | 103 |
| | 권고 | 2017대선-자심6 | 시민일보 | 104 |
| | 권고 | 2017대선-자심7 | 영남일보 | 107 |

| 구분 | 결정 유형 | 의결 번호 | 시정요구인 / 매체명 | 면수 |
|--------|-------|------------|-------------|-----|
| 시정요구심의 | 경 고 | 2017대선-시심1 | 문재인 / 중앙일보 | 109 |

2. 언론사별

| 구분 | 언론 사명 | 결정 유형 | 의결 번호 | 면수 |
|------|-------|-------|------------|-----|
| 자체심의 | 경남매일 | 주의 | 2017대선-자심5 | 98 |
| | 경향신문 | 권고 | 2017대선-자심2 | 102 |
| | 대구일보 | 주의 | 2017대선-자심1 | 94 |
| | 미래한국 | 경고 | 2017대선-자심4 | 75 |
| | 시민일보 | 권고 | 2017대선-자심6 | 104 |
| | 영남일보 | 권고 | 2017대선-자심7 | 107 |
| | 조선일보 | 주의 | 2017대선-자심9 | 101 |
| | 주간경향 | 권고 | 2017대선-자심3 | 103 |
| | 주간한국 | 경고 | 2017대선-자심8 | 89 |

| 구분 | 매체명 / 시정요구인 | 결정 유형 | 의결 번호 | 면수 |
|--------|-------------|-------|------------|-----|
| 시정요구심의 | 중앙일보 / 문재인 | 경고 | 2017대선-시심1 | 109 |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397-3114
 언론분쟁상담 02)397-3000, 3010, 3100, 3110
 FAX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6층
 전화 051) 759 - 7083~4 | FAX 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금동 541-1) 은성빌딩 5층
 전화 053)763-0020~1 | FAX 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지평동) 우체국보험회관 5층
 전화 062)676-0360~1 | FAX 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5층
 전화 042)525-0778~9 | FAX 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6-1)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031)211-9022, 9027 | FAX 031)211-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033)255-2878~9 | FAX 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전화 043)286-8081, 8083 | FAX 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72(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063)288-0010, 0981 | FAX 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사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전화 055)263-1780, 1787 | FAX 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남광북 5길(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064)722-3328, 3352 | FAX 064)726-3201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인쇄일 2017년 7월 21일

발행일 2017년 7월 21일

발행인 양인석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심리본부 기사심의팀 (02-397-3153)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 FAX 02)397-3089

<http://www.pac.or.kr>

제작 더에이치

※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19 대 대통령 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